

가 11-17-

가

김현수·조영기

가

-

-

Ex Post Legislative Evaluation

- A Case Study of “Means Test” in the Bankruptcy Abuse
Prevention and Consumer Protection Act of 2005 -

연구자 : 김현수(초청연구원)

Kim, Hyun-Soo

조영기(초청연구원)

Cho, Young-Ki

2011. 6. 30.



I.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입법의 합리성, 효율성, 신뢰성 제고에 이바지하는 접근법으로서 ‘입법평가’의 효용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입법평가의 개념, 제도화 등에 관한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음
- 이와 동시에 입법평가의 실질적 효용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입법평가의 목적, 대상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다양한 방법론에 대한 지속적 연구가 필요

□ 연구의 목적

- 동 연구는 2005년 개정된 미국 연방파산법의 입법목적 달성여부를 검증한 “2007년 소비자파산 프로젝트”를 분석함으로써, 사후적 입법평가 방법론 개발 및 적용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이와 동시에, 우리나라 파산법제에서 파산절차의 남용규제에 대한 실정법적 개선방향에 위한 법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으로 함

II. 주요 내용

□ 파산남용 및 소비자 보호법

- 미국의 연방파산법상 제7장 청산절차와 제13장 채무정리절차에 대한 선택에 있어 실무적으로는 제7장 절차의 활용을 통한 즉시 청산의 이점 등을 이유로 이를 남용하는 사례가 발생
- 이를 배경으로 미국 연방파산법은 2005년 법개정을 통하여, 채무자의 가용소득 기반의 객관적, 수치적 기준인 “변제자력조사 (means test)”라고 하는 파산절차의 남용에 대한 추정효를 부여하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였음

□ 2007 소비자 파산 프로젝트

- 동 프로젝트는 2005년 연방파산법의 법개정이 파산절차 남용자를 규제하고자 하는 실질적인 입법목적으로 달성하였는지에 대하여 파산신청자를 대상으로 검증하였음
- 동 프로젝트는 2005년 연방파산법 개정 이후 파산가구들의 전국 규모 데이터를 수집하여 ‘파산신청자’를 중심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검증을 실시하여, 변제자력조사가 실질적으로 기능하였는지를 살펴봄
- 동 프로젝트는 동 법의 개정은 고소득 남용자 뿐 아니라, 채무자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채무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개정 입법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결론짓고 있음

Ⅲ. 기대효과

□ 사후적 입법평가 방법론 개발을 위한 합의 도출

- 개정 입법목적의 달성여부, 입법의 부작용 확인 등을 확인하기 위한 사후적 입법평가의 실제적 사례를 통하여 사회과학 방법론을 활용한 연구설계의 중요성에 대한 시사점 제시

□ 파산절차남용 규제를 위한 법정책적 시사점 제시

- 파산법 개정을 통하여 채무자의 ‘소득’만을 기준으로 파산절차 남용을 규제하는 접근법은 객관적, 수치적 단일 기준에 의하여 입법의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신중한 접근법이 요구됨

▶ 주제어 : 사후적 입법평가, 입법평가 방법론, 미국 연방파산법, 파산절차 남용규제, 파산남용방지 및 소비자 보호법

Abstract

I . Background and Purpose

Background

- In recent years, the heightened awareness of the ‘legislative evaluation’, which can be an effective approach to improve rationalization, efficiency, and reliability of legislation, has led to extensive researches in this field from various perspectives.
- Given the fact that there are a variety of purposes and subjects of legislative evaluation, it is necessary to research into various effective methodologies of conducting legislative evaluation.

Purpose

- This research analyzes the “2007 Consumer Bankruptcy Project”, which examined whether the amendment of federal bankruptcy act in 2005 achieved its legislative intention, and seeks important implications in the area of method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of *ex post* legislative evaluation.
- Furthermore, it also concludes with substantive policy implications in the field of bankruptcy law in Korea.

II. Main Contents

- The Bankruptcy Abuse Prevention and Consumer Protection Act of 2005
 - The U.S. Congress intended that most consumer debtors would choose Chapter 13 over Chapter 7 from a policy perspective. However, many debtors do not choose chapter 13, but opt for Chapter 7 with some benefits of chapter 7.
 - One of the benefits of Chapter 7 is to allow debtors to receive an immediate discharge without paying creditors any of her future income.
 - This preference for Chapter 7 motivated the enactment of the Chapter 7 “substantial abuse” provision in 1984, and then the revised “abuse” test (“means test”) in 2005 that spells out what level of excess income constitutes presumptive abuses.

- The 2007 Consumer Bankruptcy Project
 - The project examined whether the “bankruptcy abuse prevention and consumer protection act of 2005” achieved its purpose that restrict eligibility for relief under chapter 7 from an empirical perspective.

 - It concluded that “instead of functioning like a sieve, carefully sorting the high-income abusers from those in true-need, the amendments' means test functioned more like a barricade, blocking out hundreds of thousands of struggling families indiscriminately, regardless of their individual income circumstances.”

III. Implications

Methodological implications for *ex post* legislative evaluation

- This research has methodological implications of the 2007 Project for *ex post* legislative evaluation that evaluates whether an act achieved its intended purpose, and identify side-effects of the act by adopting empirical methods.

Policy and legal implications for bankruptcy law in Korea

- It also has some policy and legal implication for bankruptcy law in Korea, which has been considering some measures that would prevent bankruptcy abuse.
- In fact, the 2007 Project in the U.S. suggests that means test focusing on income that is supposed to differentiate can-pay debtors from their can't-pay counterparts may not be an effective approach, a new approach taking account of the overall financial condition of debtors should be considered.

➤ **Key Words : Ex-post legislative evaluation, legislative evaluation methods, federal bankruptcy law in the U.S., bankruptcy abuse prevention, bankruptcy abuse prevention and consumer protection act of 2005**

목 차

요 약 문	3
Abstract	7
제 1 장 서 론	13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3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9
제 2 장 미국 파산납용금지 및 소비자 보호법	21
제 1 절 미국 파산법 개관	21
1. 미국 파산법의 목적 및 법원(法源)	21
2. 미국 파산법의 발전	23
3. 연방파산법상 소비자 구제절차: 제7장과 제13장 절차	26
제 2 절 파산납용금지 및 소비자 보호법	33
1. 2005년 연방파산법 개정 배경	33
2. 2005년 연방파산법 개정의 주요내용	37
3. 변제자력조사(means test)	40
제 3 장 2005년 개정 연방파산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2007 소비자 파산 프로젝트	47
제 1 절 2007 소비자 파산 프로젝트 개관	47
제 2 절 연구설계	49
1. 데이터 수집방법 및 연구절차	50

2. 분석 데이터 정보	59
3. 분석 방법	60
제 3 절 소비자파산 프로젝트 결과	63
1. 시기별 파산신청 가구의 평균(mdn) 소득비교	64
2. 가구 수입 수준별 구성 비율 변화	65
3. 제7장, 제13장 파산신청 가구들의 평균(mdn) 소득비교	67
4. 시기별 파산신청 가구의 평균(mdn) 총자산과 총채무	71
5. 시기별 파산신청 가구의 평균(mdn) 순자산	72
6. 시기별 파산신청 가구의 평균(mdn) 담보채무	74
7. 시기별 파산신청 가구의 평균(mdn) 무담보채무	76
8. 시기별 파산신청 가구의 평균(mdn) 무담보채무의 평균(average) 연간변화율 비교	78
9. 시기별 파산신청 가구의 총 소득 대비 채무비율	79
10. 시기별 파산신청 가구의 무담보 소득 대비 채무비율	80
11. 개정 이후 파산 신청자 급감에 대한 추정	81
12. 결과의 요약	85
제 4 장 결 론	87
제 1 절 사후적 입법평가 방법론 개선에 관한 합의	87
제 2 절 국내 소비자 파산법 분야에서 파산절차 남용자 규제를 위한 법정책적 시사점	90
참 고 문 헌	95

【부 록】

2007 소비자 파산 프로젝트 설문	101
---------------------------	-----

제 1 장 서 론

1

입법의 합리성, 효율성, 신뢰성 제고에 이바지하는 접근법으로서 ‘입법평가’¹⁾의 유용성에 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최근 이에 대한 연구의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국외에서도 입법평가에 관한 연구가 본격화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고, 입법평가에 대한 개념, 방법론 등에 대한 이론적·실무적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²⁾

국내에서도 입법평가에 관한 연구가 본격화된 것은 불과 수년 전부터라고 할 수 있다. 입법평가 연구에 관하여 그리 길지 않은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 초기 외국의 관련제도, 이론 및 사례 연구로부터 출발하여,³⁾ 최근에는 법경제학이나 설문조사 등 사회과학

-
- 1)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입법평가’의 개념에 대한 권위적 해석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입법평가’에 대응하는 용어는 독일에서의 *Gesetzesfolgenabschätzung*, *Rechtswirkungsforschung*, *Wirkungsprognose*를 들 수 있으며, 영미권 국가에서 사용되는 *Regulatory Impact Assessment(RIA)*를 들 수 있다. 그리고 *Gesetzesfolgenabschätzung*과 *RIA*는 실제로 동일한 내용으로 이해되고 있다고 한다. 박영도, 입법학 입문, 한국법제연구원, 2008, 533-543면 참조. 입법평가의 목적은 관점에 따라 다양한 설명이 가능하다. 관료주의 철폐와 규제완화와 같이 국가적 규제를 양적으로 축소하는 한편, 질적인 개선을 추구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입법평가제도의 의의 및 기능에 관한 의미있는 고찰을 하고 있는 국내문헌으로는 박영도, 앞의 책, 539-543면 참조.
 - 2) 방법론에 관한 예를 들면, Koen van Aeken, *Pushing Evaluation Forward. Institutionalization as a Means to Foster Methodological Growth of Legislative Ex Ante Evaluation*, in *The Impact of Legislation: A Critical Analysis of Ex Ante Evaluation* 105-134 (Jonathan Verschuuren ed., 2009)(사전적 입법평가의 방법론에 관하여 개괄하며, 사전적 입법평가의 방법론적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제도화를 제시) 참조.
 - 3)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수행한 입법평가에 관한 연구 중 **외국의 ‘입법평가 제도’**와 관련된 연구로는 박영도·안성경, 주요국가의 입법평가 관련제도(I) -EU의 영향평가제도-, 한국법제연구원, 2007(EU의 영향평가제도의 성립배경 및 영향평가의 방법과 절차를 소개하고, 부록으로 EU의 영향평가이드라인 및 부속서 전문을 소개); 박영도·한귀현, 주요국가의 입법평가 관련제도(II) -미국의 규제영향분석제도-, 한국법제연구원, 2007(미국 행정명령 제12866호를 중심으로 미국의 규제영향분석 분석);

방법론 등을 적용한 학제적 접근을 통하여 개별 분야의 입법에 대한 평가가 수행되고 있다.⁴⁾

박영도·장병일·안성경, 주요국가의 입법평가 관련제도(III) -독일의 입법평가제도- 한국법제연구원, 2007(연방각부공동직무규칙(Gemeinsame Geschäftsordnung der Bundesministerien: GGO)과 주 차원의 제도를 소개); 박영도·장병일, 주요국가의 입법평가 관련제도(IV) -영국의 규제영향평가제도-, 한국법제연구원, 2007); 박영도·장병일, 주요국가의 입법평가 관련제도(V) -오스트리아·스위스의 입법평가제도-, 한국법제연구원, 2007 등을 참조. 또한, 최근에는 ‘입법평가’를 주제로 한 박사학위도 배출되고 있다. 예를 들어, 정호영, 입법평가를 위한 법경제학적 접근방식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임명현, 입법의 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연구 - 국가재정관리를 위한 입법평가의 활용성 연구 -,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참조. 이와 동시에 우리 사회에서 입법평가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기반이 되는 이론 및 제도화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발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대희·강현철·류철호, 입법평가기준과 평가지침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8; 김수용, 입법평가지침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9; 이순태 외, 입법평가 가이드라인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0 등 참조.

- 4) 개별입법에 관한 입법평가로는 강현철·차현숙, 공장설립 규제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한국법제연구원, 2008(공장설립 관련 법제에 대하여 사후적 입법평가의 관점에서 규범론적 분석, 법사회학적 분석을 통하여 대안을 제시); 윤광진, 규제성격에 따른 입법평가 - 복권 및 복권기금법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07; 한상운·차현숙, 자연보전권역의 공장입지규제에 대한 입법평가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9; 이준석·정태용·소병천·강현철, 중소기업 창업관련 규제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한국법제연구원, 2009(중소기업창업 관련 법제에 관한 사후적 입법평가를 수행); 정종섭·최정필·최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상 학예사 자격제도에 관한 입법평가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9(규범적 분석과 전문가 및 수범자 의견조사를 기반으로 한 사후적 입법평가를 수행); 고재중·류승훈·강현철, 금융규제 통합과 관련한 보험규제 법제의 입법평가, 한국법제연구원, 2009(규범평가와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사전적 입법평가를 수행); 김성천·차현숙, 리콜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한국법제연구원, 2009(규범론적 분석, 수범자 실태분석, 비교법적 분석을 통한 사후적 입법평가를 수행); 김인철·견진만·윤광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대한 입법평가, 한국법제연구원, 2009(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관련된 평가지수 항목과 합수를 설정하여, 독일의 ‘수발보험법’, 일본의 ‘개호보험법’의 관련 조항과 비교); 우주형·강종건·윤석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입법평가, 한국법제연구원, 2009(‘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후적 입법평가로서, 규범평가, 입법체계성평가, 장애인복지계 종사자와 전문가에 대한 설문조사, 장애인 고용분야에 관한 비용·효과분석을 방법론으로 사용); 김수용·사동천·류창호, 농지규제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한국법제연구원, 2009(농지소유제도, 농지임대차제도 등 농지규제법제에 관한 사후평가를 문헌조사, 통계조사, 규범분석,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실행); 차현숙·황성기·이희정, 담배제품의 규제에 대한 입법평가, 한국법제연구원, 2009(기본 담배제품의 규제에 관하여 사후적 입법평가를 수행하는 동시에 대안에 대한 사전적 입법평가를 규범론적 평가, 실태조사, 비교법적 분석,

또한, 입법평가 연구의 발전적 전개와 더불어 입법평가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방법론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입법과정(legislative cycle)을 기준으로 입법평가는 일반적으로 사전적, 병행적, 사후적 입법평가로 나누어 설명될 수 있다.⁵⁾ 이러한 단계별 입법평가에 있어 입법의 질의 향상이라는 목적을 추구하는 입법평가의 기능적 측면을 고려하는 경우, 입법과정 전반에 걸쳐 단계별 입법평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피드백 연구(feedback research)”를 수행함으로써 입법평가의 효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⁶⁾ 그리고 이러한 피드백 연구의 실질적 수행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론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 앞서 간략히 언급한 바와 같이 입법평가 연구가 입법평가에 관한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입법평가연구는 외국의 이론이나 제도에 대한 기초적 연구로부터 출발하여, 최근 입법평가의 방법론에 관한 연구 역시 이루어지고 있다.⁷⁾ 그러나 입법평

전문가회의, 비용편익분석 방법으로 실행); 윤석진·김주환·김명환, 장애인연금제도 도입에 대한 입법평가, 한국법제연구원, 2009(관련입법에 대한 사전평가로 이용가치분석, 경제성분석, 사회영향분석을 실행); 최윤철, 로스쿨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공법연구 제36권 제1호, 한국공법학회, 2007(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관련된 평가지수 항목과 함수를 설정하여, 독일의 ‘수발보험법’, 일본의 ‘개호보험법’의 관련 조항과 비교) 참조.

- 5) 입법평가를 사전적, 병행적, 사후적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방식은 입법단계와 입법평가의 대상을 구분하여 “prospektive, begleitende, retrospektive Gesetzesfolgenabschätzung”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 독일의 사례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영도, 앞의 책, 535면. 또한, 이는 “기술효과평가(Technikfolgenabschätzung: TFA)의 개념”에서 파생한 것으로 “정책평가(Programm Evaluation)의 이론을 입법학의 분야에서 응용·도입한 것”이라고 한다. 박영도, 앞의 책, 613면.
- 6) Rob van Gestel & Jan Vranken, *Assessing the Accuracy of Ex Ante Evaluation through Feedback Research: A Case Study*, in *The Impact of Legislation: A Critical Analysis of Ex Ante Evaluation* 199-228 (Jonathan Verschuuren ed., 2009)(“This type of research aims to compare the results from ex ante evaluations and advisory opinions concerning the quality of legislative drafts with the outcomes of ex post evaluations to find out which judgments and predictions were (not) correct in retrospect and which essential flaws were overlooked.”) 참조.
- 7) 외국의 입법평가와 관련된 **방법론 및 사례연구**로는 임명현, 재정수반법률안에 대한 입법평가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7; 박수현, 미국 주간대청정규칙의 제정에 대한 입법평가 사례분석, 한국법제연구원, 2007; 장병일·성홍재,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대한 효과 분석 - 스위스 자문센터 경험에 대한 비교적 고찰을 통한 한국

가의 목적, 대상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입법평가의 방법론은 매우 다양한 모습을 갖출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입법평가연구 사업의 초기단계에 중점적으로 이루어진 사전적 또는 병행적 입법평가 방법론과의 유기적 연결을 도모하며, 입법의 목적 달성 여부, 입법으로 인한 부작용 확인, 실질적 규제부담의 정도, 개정 또는 폐지의 여부의 결정을 가능케 하는 사후적 입법평가 방법론의 개발에 관한 연구의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사후적 입법평가(*ex post legislation evaluation*)의 수행 목적 중 핵심적인 것은 “법규정으로부터 발생한 결과를 조사·평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⁸⁾ 이는 입법의 결과(즉, 법령의 문언)만이 아니라 피드백의 중요성을 예정하고 있는 입법평가 개념에서 핵심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해당 법령이 달성하고자 하는 법목적의 달성하였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⁹⁾ 법목적 달성 여부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를 통해서 해당 법령이 애초에 의도했던 효과 및 효율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더불어 법제정 또는 개정 당시 예상치 못한 법제의 부작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 법개정 또는 폐지를 위한 근거를 제공하며, 개정의 범위 및 추가적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게 해 준다.¹⁰⁾

의 범죄피해자보호제도의 역할 및 나아갈 방향에 대해 -, 한국법제연구원, 2007; 최윤철, 독일과 스위스의 입법평가 사례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8; 박수현, 미국 연방자동차안전기준 202 승객용 차량을 위한 머리지지대 제정에 대한 입법평가 사례분석, 한국법제연구원, 2008; 박수현, 미연방 「신약신청자 부담금법」(PDUFAIII)에 따른 FDA의 신약승인신청의 1차 심사 수행에 대한 입법평가 사례분석, 한국법제연구원, 2009; 박종수, 오스트리아의 표준비용모델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9; 정창화, 독일의 입법평가지침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9; 박영도, 국제표준비용모델 매뉴얼, 한국법제연구원, 2009; 윤광진·김한창·박계관, 입법평가적용을 위한 비용편익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9.

8) 물론, 관점에 따라 사후적 입법평가에 대한 기준은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입법평가 기준의 다양성에 관한 내용은 박영도, 앞의 책, 544-563면 참조.

9) 박영도·장병일, 입법평가 입문 - 법률, 법규명령, 행정규칙 -, 한국법제연구원, 2007, 293면 이하 참조.

10) 박영도·장병일, 앞의 책, 293면; 박영도, 앞의 책, 648면.

법목적 달성 여부의 확인 및 평가라는 사후적 입법평가의 핵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실질적 평가는 기타의 입법평가의 분석방법론과 마찬가지로, 구상단계, 실행단계, 평가단계로 구분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단계별 사후적 입법평가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사후적 입법평가의 대상, 목적, 범위, 평가방법론 결정 등을 검토하고 확정하는 구상단계¹¹⁾가 전체적인 평가과정에서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한다. 즉, 사후적 입법평가의 대상이 확정된 이후, 구상단계에서는 입법평가의 핵심적인 심사기준¹²⁾인 법목적의 달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통계나 설문조사와 같이 사회과학 분야에서 전통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증적 방법(empirical methods)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된다.

한편, 실증적 방법론의 적용은 연구문제의 선정, 조사설계(가설의 정립 등), 데이터의 수집·가공, 가설의 검증이라고 하는 사회과학적 방법론에 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수행할 것이 요구된다.¹³⁾ 그리고 법사회학, 법경제학, 사회과학 조사방법론 등 전통적인 법학영역 등

11) 사후적 입법평가의 구상단계는 “1) 사후 입법평가의 동기, 2) 심사기준의 확정, 3) 사후평가범위의 확정, 4) 비교방식의 선택, 5) 심사기준의 조작화, 6) 자료조사방식의 선택, 자료조사의 관념적·조직적 준비, 6) 평가절차의 확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한다. 박영도·장병일, 앞의 책, 295면. 사후적 입법평가를 위하여 해당 법률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평가의 기초는 “경험적으로 조사된 자료를 도움으로 개별적인 심사기준을 비교”하게 된다. 박영도·장병일, 앞의 책, 294면.

12) 이외의 심사기준으로는 비용·편익 효과, 수용성, 실용성, 부수적 효과 등을 들 수 있다. 박영도, 앞의 책, 653면.

13) 채서일, 사회과학조사방법론 (2005), 75-87면. 한편, 최근 미국에서도 해당 법률의 목적 달성여부를 실증적으로 검토하고자 하는 주제가 법학에서 중요한 하나의 분야로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실증법학 연구방법론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구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이하 본문의 내용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검토의 대상이 된 소비자 파산 프로젝트 보고서 또한,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의 법실증주의(American Legal Realism)하에서 사회과학 방법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연구방법론은 사후적 입법평가의 방법론을 정립하는데도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John Henry Schlegel, American Legal Realism and Empirical Social Science (1995) 참조.

관련 영역과의 연계성이 중요시되는 사후적 입법평가를 위해서는 입법평가를 위한 구상단계에서 범목적 달성 여부의 확인을 위한 평가목적의 확정, 가설의 검토와 더불어 “사용할 조사방법의 제시, 조사시 따라야 할 전반적인 조사들의 설정, 자료수집절차와 자료분석기법의 결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¹⁴⁾ 구상단계에서 결정된 사항을 바탕으로 이후 자료의 수집이 끝나게 되면, 자료의 정정, 보완작업이 이루어지게 되고, 선택된 통계적 기법을 활용하여 의미있는 평가를 수행하게 된다.¹⁵⁾

이상에서 간단히 살펴본 바와 같이 범목적 달성여부라는 사후적 입법평가의 실시에 있어서 그 성공여부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구상단계에서의 적절한 방법론의 활용에 관한 능력의 보유라고 할 수 있다. 즉, 사후적 입법평가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개별 입법평가 전체의 연구설계(research design)에 관한 능력이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사후적 입법평가를 위한 방법론 개발시 요구되는 필요사항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채무자의 변제자력조사(means test)¹⁶⁾ 제도를 채택하여 파산절차의 남용의 규제를 개정 입법의 주요목적으로 하였던 2005년 미국 파산남용방지 및 소비자 보호법(2005 Bankruptcy Abuse Prevention and Consumer Protection Act: 2005년 개정 연방파산법: 이하 “2005년 개정 연방파산법”이라 한다)의 실증적 효과에 관한 학제간 연구로 수행된 2007년 소비자파산 프로젝트(2007 Consumer Bankruptcy Project)¹⁷⁾를 고찰한다. 이를 통하여, 입법목

14) 채서일, 앞의 책, 78면.

15) 채서일, 앞의 책, 78면 참조(“동일한 과정을 통해 얻어진 분석결과들도 분석자의 통계기법에 대한 이해의 차이나 분석관점에 의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분석자의 통계기법과 사회과학 전반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16) means test에 관한 상세는 제3장 제2절 참조.

17) 소비자파산 프로젝트에 관한 상세는 제3장 참조.

적 달성여부, 입법의 부작용 확인 등 사후적 입법평가에서 요구되는 사회과학 방법론의 실질적 적용사례를 살펴보면서, 사후적 입법평가를 위한 방법론 개발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의 결론에서는 우리나라의 파산법제에서 파산절차의 남용을 규제하는 방안에 대한 법정정책적 함의를 찾아봄으로써 동 연구의 실무적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한다.

2

본 연구의 범위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미국 파산법의 목적, 법원(法源), 주요 참가자, 주요 연혁 등 미국 파산법제를 개관한다. 그리고 이 연구의 대상이 된 2007년 소비자 파산 프로젝트에서 법개정의 목적 달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2005년 개정 연방파산법의 개정배경 및 주요내용을 검토한다. 아울러, 2005년 법개정의 핵심을 이루는 “변제자력조사”에 대하여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2005년 개정 연방파산법이 파산남용 규제라고 하는 법목적의 달성하였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수행한 “소비자 파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법목적 달성 여부의 확인을 위한 방법론을 분석한다. 이와 함께 방법론상 문제점에 관한 최근의 논의를 고찰한다. 제4장의 시사점 및 결론에서는 사후적 입법평가 방법론 개발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이와 아울러, 국내 파산법 분야에서의 변제자력조사 여부 등 파산법 관련 정책의 시사점을 제시한다.

제 2 장 미국 파산납용금지 및 소비자 보호법

1

1. 미국 파산법의 목적 및 법원(法源)

파산사건에는 채무자 및 채권자와 더불어 다양한 참가자(Participants in a Bankruptcy Case)들이 존재하게 된다.¹⁸⁾ 파산법이 추구하는 정책적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다.¹⁹⁾ 첫째, 지급불능에 빠진 채무자의 재산으로 채권자들 사이에서 공평한 분배를 확보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채권추심제도(debt collection system)로 기능하는 것이

18) 채무자와 채권자 이외의 주요한 참가자에 대한 간략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미국 파산법상 파산재단을 대표하는 ‘관재인(trustee)’은 몇 가지 다른 형태로 존재하며, 각각의 차이점은 파산법상 어떠한 장에서 적용을 받는가에 달려있다. 관재인의 역할의 차이점을 구별하는 분명한 방법은 특정한 관재인에 부과된 성문법적 의무를 살펴보는 것이다. 11 U.S.C.A. § 322(a) (West 2011). 미국 ‘파산법원 판사(United States Bankruptcy Judge)’는 파산사건을 주재하는 사법부 공무원(judicial officer)의 지위를 가진다. 그러나 파산법원 판사는 연방헌법 Article III에서 규정하는 종신직으로서 판사의 지위를 가지지는 않으며, 연방 지방법원의 사법부 공무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한다. 28 U.S.C.A. § 152(a)(1) (West 2011). 따라서, 파산법원 판사는 연방헌법 Article III의 단위조직(unit)으로서 기능하는 것으로 연방 지방법원에 소속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28 U.S.C.A. § 151 (West 2011). 미국 ‘파산관리위원회(United States Trustee)’는 법무부의 한 부서로 법무부장관(Attorney General)에 의해 임명되고 지휘를 받으며, 무적으로는 미국 파산관리위원회 사무국(Executive Office for United States Trustees)에 의하여 직무활동이 조정된다. 28 U.S.C. §§ 581(a), 586(c). 파산관리위원회 업무의 핵심은 파산사건과 관련한 행정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파산사건에서 직무를 수행할 민간 관재인단의 구성; 파산관재인 선임 및 제12장과 제13장 사건에서의 상실관재인 선임, 청산 및 회생계획의 보고 청취 등이다. 파산관리위원회의 상세한 임무는 28 U.S.C. § 586(a) 참조. 파산관리위원회 전반에 관한 소개는 Sarah Rudolph Cole, *Obligations of the United States Trustee's Office under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J. Bankr. L. & Prac. 371 (1996) 참조.

19) 미국 파산법의 정책 및 목적에 관하여는 다음의 문헌을 참조. Elizabeth Warren, *Bankruptcy Policy*, 54 U. Chi. L. Rev. 775 (1987); Donald R. Korobkin, *Rehabilitating Values: A Jurisprudence of Bankruptcy*, 91 Colum. L. Rev. 717 (1991); Lynn M. Lopucki, *A General Theory of the Dynamics of the State Remedies/Bankruptcy System*, 1982 Wis. L. Rev. 311 (1982) 참조. 국내문헌으로는 임치용, *파산법 연구*, 2004, 205면 이하; 전병서, *도산법*, 법문사, 2007, 4-5면.

다.²⁰⁾ 두 번째로 정직하거나 불운한 채무자로 하여금 면책이라는 법률 효과를 발생시켜 채권자들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고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²¹⁾ 전통적으로 미국 파산법은 이 두 가지 목적 중 두 번째 목적에 중점을 두어 발전해 왔다고 할 수 있으나,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에는 이러한 전통적인 태도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연방 파산법은 미국 연방법전 제11절(Title 11)에서 규율되고 있다.²²⁾ 1978년 파산개혁법(Bankruptcy Reform Act of 1978)의 제정으로 이 절은 새로운 모습으로 재편되었고, 파산관련 사항을 다루는 수많은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오늘날 미국 파산법의 기본골격을 이루었다.²³⁾ 연방법률 중 연방법전 제11절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다수의 법률에서 파산관련 문제를 다루고 있다. 예를 들어, 파산법원, 파산절차의 관할, 재판적(venue), 상소에 관한 사항은 제28절에 규정되어 있다. 파산조세법은 제16절에서 규정되어 있으며, 파산 관련 형사범죄에 관한 조항은 제18절에서 규정되어 있다.

파산에서의 실무와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미 연방대법원이 규칙의 형식 공포하여, 1983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파산규칙(the Bankruptcy

20) Elizabeth Warren, Bankruptcy Policy, 54 U. Chi. L. Rev. 775, 785 (1987) (“In bankruptcy, with an inadequate pie to divide and the looming discharge of unpaid debts, the disputes center on who is entitled to shares of the debtor’s assets and how these shares are to be divided. Distribution among creditors is not incidental to other concerns; it is the center of the bankruptcy scheme. Accordingly, bankruptcy disputes are better characterized as creditor-versus-creditor, with competing creditors struggling to push the losses of default onto others.”).

21) David G. Epstein et al., Bankruptcy 3 (1993).

22) 파산법의 법원(法源)과 관련한 부분은 Lynn M. Lopucki & Christopher R. Mirick, Strategies for Creditors in Bankruptcy Proceedings 26-27 (2006)를 주로 참조한 것이다.

23) Pub. L. No. 95-598, 92 Stat. 2549 (1978). 1978년 이후에도 동 법은 수차례의 개정을 거쳤으며, 주요한 개정으로는 1984년의 파산개정 및 연방판사지위법(Bankruptcy Amendments and Federal Judgeship Act of 1984), 1984년 연방판사, 관재인, 농가 파산법(the Bankruptcy Judges, United States Trustees, Family Farmer Bankruptcy Act of 1986), 1994년 파산개혁법(the Bankruptcy Reform Act of 1994), 그리고 지난 2005년 개정된 파산납용금지 및 소비자 보호법(the Bankruptcy Abuse Prevention and Consumer Protection Act of 2005)을 들 수 있다.

Rules)에 의하여 규율된다. 그러나 파산규칙은 의회로부터의 권한의 위임에 의한 것으로 동 규칙은 실제적 권리를 축소, 확장, 또는 수정할 수 없다.²⁴⁾ 이와 더불어, 연방 지방법원의 관할별로 파산규칙들(local Bankruptcy Rules)을 공포할 수 있으며, 개별 지방법원은 이러한 권한의 일부를 파산법원에 위임할 수 있다.²⁵⁾ 또한, 파산법원은 동 규칙에 배치되지 않는 방법으로 파산실무를 규율할 수 있다. 파산법원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방법은 지방법원의 특정한 종류의 사안에 지방법원의 절차를 설명하는 표준명령을 작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²⁶⁾ 그리고 파산관련 판결례(bankruptcy cases)의 주요한 의견의 상당부분은 연방법원 차원, 즉 연방지방법원, 항소법원, 그리고 대법원에서 형성된다. 그러나 파산과 관련된 판결례에서 형성되는 법원의 의견은 파산법원에 의해서도 형성되기도 한다.²⁷⁾

2. 미국 파산법의 발전²⁸⁾

미국의 연방헌법은 제정되던 1978년부터 Article 1, section 8, clause 4에서 명시적으로 의회에 대하여 파산에 관한 통일된 법(uniform laws

24) 28 U.S.C.A. § 2075 (West 2011) (“The Supreme Court shall have the power to prescribe by general rules, the forms of process, writs, pleadings, and motions, and the practice and procedure in cases under title 11. *Such rules shall not abridge, enlarge, or modify any substantive right.*”) (emphasis added).

25) Federal Bankruptcy Rule 9029.

26) 다수의 파산법원들의 지역적 규칙들은 West Publishing Company's Bankruptcy Local Court Rules와 각 주의 법원 규칙에서 찾을 수 있다.

27) 이러한 법원의 의견들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판결집을 통해 공개된다. West's Bankruptcy Reporter (B.R. or Bankr.로 인용), 파산법원 결정(B.C.D.로 인용), Commerce Clearing House Bankruptcy Law Reporter(CCH or Bankr. L. Rep.로 인용), 그리고 Collier Bankruptcy Cases (C.B.C.로 인용).

28) 미국 파산법의 발전 및 개정과정에 관한 문헌으로는 Vern Countryman, *A History of American Bankrupt Law*, 81 Com. L.J. 226 (1976); Stefan A. Riesenfeld, *The Evolution of Modern Bankruptcy Law*, 31 Minn. L. Rev. 401 (1931). 국내문헌으로는 임치용, 미국 파산법의 개정역사, in *파산법연구*, 박영사, 2004, 203-232면; 윤영신, 미국의 도산법,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 98-3, 1998.9; 오수근, 도산법의 이해,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8, 67-83면 참조.

of bankruptcy)을 제정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다. 이후 1800년 미국 최초의 연방 파산법이 제정되었으나, 동 법은 18세기까지 영국에서 성립되어 운영되던 법을 모방한 것으로, 경제적으로 궁핍에 빠진 채무자를 위한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면책의 혜택을 부여하기 보다는 채권자를 위한 추심을 중심으로 성립한 법률, 즉 채권자에 의한 비자발적 파산신청(involuntary petition)만이 가능한 것이었다.²⁹⁾

이후 19세기와 20세기를 거치면서, 파산과 관련된 많은 법률들이 의회에서 제정되었고, 다시 폐지되는 과정을 거쳤다.³⁰⁾ 이후 1830년대와 40년대의 경제공황과 선거의 영향으로 1841년 파산법이 제정되었으며, 동 법에서는 자발적인 파산을 인정하면서 파산신청의 대상을 비상인에게도 확대하였다. 또한, 파산자의 면책에 관해서도 보다 유연한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 이후 1867년에는 회사를 규율대상으로 하고, 비상인에게까지 비자발적인 파산을 확대한 파산법이 제정되었다. 동 법은 1878년 개정되면서 화의계약(composition agreement)에 관한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갱생 또는 재건”이라는 개념이 파산법에 규정되게 되었다.³¹⁾

19세기 후반의 경제적 불황에 대처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1898년 제정된 연방파산법³²⁾은 이후 1978년 파산법에 의하여 대체되기 이전까지 80년간 지속된 것으로 “면책을 부정할 수 있는 조항을 대폭 삭제하였고 면책되지 않는 채무의 범위를 축소하였으며 면책을 얻기 위하여 채권자들의 동의가 없어도 무방하도록 규정”하였다.³³⁾

29) David G. Epstein et al., *Bankruptcy 1* (1993). 임치용, 파산법연구, 박영사, 2004, 208면(“채무자가 면책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는 파산에 수반하는 당연한 권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파산심리관(bankruptcy commissioners)과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였다. 파산자가 면책을 얻기 위하여 면책증서(certificate of discharge)를 얻어야 하는데 이 면책증서를 얻어야만 종전 채무와 채무자 구금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다.”).

30) 실제로 1800년에 제정된 연방파산법은 1803년에 폐지되었다.

31) 임치용, 앞의 책, 210-211면.

32) Ch. 541, 30 Stat. 544 (1898) (repealed 1978).

33) 임치용, 앞의 책, 213면. Charles Jordan Tabb, *The Law of Bankruptcy* 43- 46 (2d

1968년부터 약 10년에 걸친 파산개혁 작업은 1978년 연방파산법 개정으로 귀결되었다. 1978년 파산법(Bankruptcy Reform Act of 1978)³⁴⁾은 역사상 처음으로, 경제적인 공황을 원인으로 한 대응 차원의 입법이 아니며, 오늘날 미국 파산법 분야를 지배하고 있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³⁵⁾ 1978년의 개정은 미국의 파산법이 역사적으로 갖은 개정이 있었던 것을 이유로 법체계적 문제점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던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법체계적 문제점을 해결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동 법의 개정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파산법원의 관할과 파산법관의 지위에 관한 것이었다. 또한, 동 법은 제11장 재건절차를 통합하였고,³⁶⁾ 관리인의 임명에 관하여 임의적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구 경영자 또는 대주주가 계속하여 기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³⁷⁾ 그리고 소비자 파산이 급증함에 따라 제13장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를 대폭 개정하였다.³⁸⁾

1978년 법개정 이후에도 미국의 연방 파산법은 소규모 개정을 거쳤으나, 최근까지 가장 큰 개정은 지난 2005년 이루어진 파산법 개정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2005년 개정의 핵심은 “2005년 파산남용방지 및

ed., 2009) 참조.

34) Pub. L. No. 95-598, 92 Stat. 2549 (1978).

35) Charles Jordan Tabb, *The Law of Bankruptcy* 46 (2d ed., 2009) 참조.

36) 임치용, 앞의 책, 223면(“4 종류의 재건형 절차를 하나로 통합하였다. 신법은 구법의 회사재건(Corporation Reorganization), 화의(Arrangement), 철도 회사재건(Railroad Reorganization), 회사 이외의 채무자를 위한 부동산 화의(Real Property Arrangement)를 묶어 재건(Reorganization) 절차로 통합하고 정기수입 있는 개인채무자를 위한 정리(Adjustment of Debts of an Individual with Regular Income) 절차를 확대·정비하였다.”).

37) 한편으로는 재건절차에서 선순위 권리자에 대한 전액 보상이 될 때까지 후순위 권리자에게 정리계획에서 이를 부여할 수 없다는 절대적 우선순위 원칙이 완화되었다.

38) 1978년 개정법에 관한 개요 및 입법과정에 관한 상세는 임치용, 앞의 책, 220-226면; Kenneth N. Klee, *Legislative History of the New Bankruptcy Law*, 28 DePaul L. Rev. 941 (1979); Eric A. Posner,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Bankruptcy Act of 1978*, 96 Mich. L. Rev. 47 (1997).

소비자 보호법(Bankruptcy Abuse Prevention and Consumer Protection Act of 2005)³⁹⁾을 새로이 성립시키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서, 변제자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채무자에 대하여 제7장 절차를 이용할 수 없게 하는 것으로, 파산신청의 증가와 악성채무로 인한 손실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채권자측인 소비자 신용산업(consumer credit industry)의 적극적인 로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⁴⁰⁾

3. 연방파산법상 소비자 구제절차: 제7장과 제13장 절차

미국 연방파산법상 소비자 파산사건에 있어 소비자의 법적 구제와 관련한 절차는 제7장의 청산절차(Liquidation)와 제13장(Adjustment of Debts of an Individual with Regular Income)의 채무정리절차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미국 연방파산법의 근간을 이루는 1978년 법은 소비자 채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선택에 따라 제7장의 청산절차 또는 제13장의 채무정리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하였고, 이론적·제도적으로는 제7장의 절차를 선택함으로써 소비자 채무자는 파산관련 절차를 통하여 보다 많은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예정되었다. 그러나 이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실제적으로는 장래 소득을 바탕으로 제13장 절차를 활용할 수 있는 개인이 제7장을 남용할 수 있는 유인이 존재한다.

(1) 제7장에 의한 청산절차

파산제도의 전형으로서 제7장 청산절차는 전체 파산신청에서 60% 이상에 해당하는 부문이다. 청산절차에서는 채무자의 재단재산을 수

39) Pub. L. No. 109-8, 119 Stat. 23 (April 20, 2005).

40) 2005년 파산납용방지 및 소비자 보호법의 입법경과 및 주요내용에 관한 상세에 관한 국내문헌으로는 이재목, 미국 연방파산법상의 소비자파산제도와 개혁논의의 경과, 인권과 정의, 대한변호사협회(2000. 1); 김경옥, 2005년 미국연방파산법상 소비자파산제도의 주요 개정내용과 그 의미, 민사소송 제9권 제2호, 한국사법행정학회(2005. 11); Charles Jordan Tabb, The Law of Bankruptcy, Foundation Press, 180 (2009) 참조.

집하고,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하며, 채무자는 잔여채무로부터 면책되는 기본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⁴¹⁾ 기본적으로 제7장의 청산 절차에서 관재인은 채무자의 압류금지재산 또는 재단면제재산이 아닌 자산(nonexempt assets)을 청산(liquidates)하고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들에게 이들 자산을 배분하게 된다. 그리고 채무자는 재단면제재산을 보유할 수 있으며, 파산신청 이전의 채권으로부터 면책을 받게 되어 경제적 새출발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 개인을 포함한 대부분의 채무자들은 제7장 절차를 활용할 수 있는 채무자 적격을 가진다.⁴²⁾

제7장의 청산절차는 파산의 신청(filing of a petition)에 의하여 개시된다.⁴³⁾ 대부분은 채무자에 의하여 신청되며 이를 자발적 신청(voluntary petition)이라 한다. 자발적 신청의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구제명령(order for relief)이 법작용에 의하여 발생하게 된다.⁴⁴⁾ 한편, 채무자 이외의 자에 의한 신청은 비자발적 신청(involuntary petition)이라 불리우며, 적어도 3명 이상의 채권자가 신청에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⁴⁵⁾ 비자발적 신청을 하는 채권자들은 비자발적 구제를 위한 법률적 근거(statutory grounds)를 증명하여야 하며, 가장 일반적인 근거는 채무자의 일반적 지불정지(generally not paying such debtor's debts as they come due) 또는 재산청산실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⁴⁶⁾ 자발적 신청의 경우와는 달리 비자발적 신청의 경우는 파산사건을 개시하지만 구제명령이 법작용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법률적 근거에 기하여 법원은 구제명령을 발할 수 있다.

41) Charles Jordan Tabb, *The Law of Bankruptcy*, Foundation Press 92 (2009).

42) 제7장 절차를 활용할 수 없는 대상은 철도, 은행, 보험회사 및 기타 금융기관 등과 정부기관(governmental units)을 들 수 있다. 11 U.S.C.A. § 109 (b) & § 101 (West 2011).

43) 11 U.S.C.A. § 301 (West 2011).

44) 11 U.S.C.A. § 301 (West 2011).

45) 무한책임조합원(general partner) 전원이 공동으로 조합(partnership)에 대하여 제7장의 신청을 하는 경우는 자발적 신청이지만, 일부의 무한책임조합원이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비자발적 신청이 된다. 11 U.S.C.A. § 303(b) 참조.

46) 11 U.S.C.A. § 303(h) (West 2011).

파산의 신청에 의하여 해당 사건이 개시되면 두 가지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첫째, 파산사건의 개시는 파산신청 당시 채무자의 모든 재산으로 이루어진 파산재단(estate)을 구성하게 된다.⁴⁷⁾ 파산신청이 이루어지는 순간 채무자의 재산은 재단재산(property of the estate)을 구성하게 된다. 이 재산은 이후 재단면제재산 등으로 채무자에게 되돌아 올 수 있으나, 더 이상 채무자에게 속하지 않게 된다.⁴⁸⁾ 파산재단의 재산은 제7장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이 재산이 이후 청산과 배당의 대상이 된다. 둘째, 파산사건이 개시되면 채권자의 개별적 채권행사는 자동적으로 정지(automatic stay)된다.⁴⁹⁾ 자동적 정지를 위한 법원의 별도의 금지명령(injunction)은 필요치 않으며 신청자체만으로 자동적 정지가 이루어진다.

(2) 제13장에 의한 채무정리절차

제13장에 의한 채무정리절차는 개인 소비자 채무자의 회생을 위한 절차로서,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을 보유한 채 법원이 인가결정한 채무변제계획에 따라 3년에서 5년 사이에 걸쳐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기본구조를 이루고 있다.⁵⁰⁾

제13장에 의한 절차는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개인만이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⁵¹⁾ 채무자에 의한 자발적 신청에 의해서만 개시되며, 채권자 등에 의한 비자발적 신청에 의하여 개시될 수 없다.⁵²⁾ 제13장 절차의 효과 중 하나는 공동채무자(codebtor)에 대한 개별적 권리행사의 정지라고

47) 11 U.S.C.A. § 514(a) (West 2011). 파산신청 이후에 채무자가 획득한 재산은 채무자의 재산으로 남게 된다.

48) 11 U.S.C.A. § 522 (West 2011).

49) 11 U.S.C.A. § 362 (West 2011). 한편, 비자발적 신청이 있어도 구체명령이 있을 때까지는 채무자의 재산관리처분권과 업무집행권은 제한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11 U.S.C.A. § 303 (f) (West 2011).

50) Charles Jordan Tabb, *The Law of Bankruptcy*, Foundation Press 105 (2009).

51) 11 U.S.C.A. § 109(e) (West 2011).

52) 11 U.S.C.A. § 303(a) (West 2011). 채무자는 언제라도 제13장 사건을 제7장의 청산사건으로 이행(conversion)할 수 있다.

할 수 있다.⁵³⁾ 제13장 사건이 개시되면 관재인이 선임된다.⁵⁴⁾ 인가계획에 기초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는 제13장 사건 관재인을 통하여 실시된다.⁵⁵⁾ 제13장 사건의 관재인은 제7장 청산사건 관재인과 거의 유사한 의무를⁵⁶⁾ 부담하게 되지만, 그 성질상 재단재산을 수집하고 환가하는 의무는 부담하지 않고, 업무보고나 재무보고를 행할 부담을 가지지 않는다.⁵⁷⁾ 제7장 관재인이 부담하지 않는 의무로는 담보물 평가, 계획안 인가, 계획안 변경을 위한 각 심문기일에 출두하여 의견의 진술,⁵⁸⁾ 그리고 채무자가 계획안을 실행하는 것과 관련한 법적 문제 이외의 조언 제공, 계획안 제출 후 가능한 조속히 늦어도 30일 이내에 계획안에 근거하여 변제를 개시할 수 있도록 확보해 두는 것 등의 의무가 있다.⁵⁹⁾

계획안에는 1) 채무자의 장래의 수입의 전부 또는 계획안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을 관재인의 감독과 관리 하에 두는 사항, 2) 특정한 채권의 보유자가 당해 채권에 관해 달리 취급할 것에 관해 동의하지 않은 경우 제507조하에서 우선권이 부여된 모든 채권의 전액변제(full payment)에 관한 사항, 3) 채권의 조를 분류하는 경우, 각 조별로 채권을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것에 관한 사항이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⁶⁰⁾

법원은 심문기일을 열어 계획안이 다음과 같은 일정한 요건을 만족한다고 판단한 때에는 계획안을 인가하여야 한다. 즉, 1) 연방파산법

53) 보증인 등 공동채무자는 채무자의 친구, 친척 등 채무자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자인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54) 대부분의 연방지방법원 관할구역에서는 1인의 상설관재인(standing trustee)이 선임되어 있으며, 이러한 관할구역에서는 상설관재인이 개별 제13장 사건의 관재인이 되지만, 상설관재인을 두지 않은 구역에서는 연방관재인이 이해관계인이 아닌 자를 관재인에 선임하거나 스스로 관재인이 된다. 11 U.S.C.A. § 1302(a).

55) 11 U.S.C.A. § 1326(c) (West 2011).

56) 11 U.S.C.A. § 704(a)(3)-(7) & (9) (West 2011) 참조.

57) 11 U.S.C.A. § 704(a)(1) & § 704(a)(8); § 1302(b)(1) (West 2011) 참조.

58) 11 U.S.C.A. § 1302(b)(2) (West 2011) 참조.

59) 11 U.S.C.A. § 1302(b)(2), (4), (5) & 1326 (West 2011) 참조.

60) 11 U.S.C.A. § 1322(a) (West 2011). 기타 임의적 기재사항에 관한 것은 § 1322(b) 참조.

의 기타 규정에 합치할 것, 2) 연방법전 제28절 제123장(신청비용)이나 계획안에 따라 계획안 인가 전에 지불되어야 하는 비용, 요금, 금원이 지불되어 있을 것, 3) 계획안이 성실하게(in good faith) 그리고 법에 의하여 금지되지 않은 방법으로 제안되어 있을 것, 4) 계획안 발표일 현재 계획안에 의하여 무담보채권에 대하여 배당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의 가치가 제7장 청산사건에서 재단재산이 환가되었다고 가정한 경우의 배당액보다 적지 않을 것 등과 같은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⁶¹⁾ 계획안 인가에 의하여 모든 채권자는 인가계획의 조항에 구속된다. 그 채권자의 채권이 계획에 기재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채권자가 계획에 동의하는가를 묻지 않는다.⁶²⁾ 특히 계획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단재산은 채무자에게 귀속하고, 계획안에서 담보권이 존속한다고 정해져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부담도 없는(free and clear) 재산이 채무자에게 귀속하게 된다.⁶³⁾ 채무자는 계획안 제출 후 30일 이내에 계획안에 따라 변제를 개시하여야 한다. 그 지불은 관재인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관재인은 계획안이 인가될 때까지 그 변제금을 임치해 두고, 계획안 인가 후 가능한 빨리 인계계획에 근거하여 변제를 실시하고 계획안이 인가되지 않은 때는 관재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채무자에게 반환한다.⁶⁴⁾

제13장에는 두 종류의 면책이 정해져 있다. 첫째로는 계획에 근거하여 변제를 완료한 경우의 면책이다. 법원은 필요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을 해야 한다.⁶⁵⁾ 두 번째 유형으로는 계획에 의한 일부변제는 이루어졌지만, 그 변제를 완료할 수 없었던 경우에, 법원이 통지와 심문의 절차를 거쳐 허가하는 면책이다.⁶⁶⁾

61) 11 U.S.C.A. § 1325 (West 2011).

62) 11 U.S.C.A. § 1327(a) (West 2011).

63) 11 U.S.C.A. § 1327(b) (West 2011).

64) 11 U.S.C.A. § 1326(a)(1) & (2) (West 2011).

65) 11 U.S.C.A. § 1328(a) (West 2011).

66) 11 U.S.C.A. § 1328(b) (West 2011).

(3) 소비자 파산에 있어서 제7장과 제13장의 활용: 이론적 측면과 실제적 운용의 차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비자 구제절차에 있어 제7장에 의한 청산 절차와 함께 제13장의 채무정리절차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며, 일반적으로 소비자 채무자는 제7장과 제13장의 절차 사이에서 선택하게 된다.

이론적으로는 제7장 절차에 의하지 않고, 제13장 절차를 선택하는 경우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 유리한 측면이 있으며, 법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채무자를 가능한 한 제13장으로 유도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⁶⁷⁾ 그러나 제13장 사건에는 제7장 사건과 비교하여 이론적으로 많은 이점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반드시 이러한 정책적 의도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제13장 절차에서는 채무자가 재단면제재산이 아닌 자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반면, 제7장하에서는 배당을 위하여 이들 자산을 관재인이 관리하게 된다. 따라서, 자신의 집이나 차를 계속 보유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제13장하에서의 절차를 선호하게 된다. 즉, 제7장 사건에서 자산은 관재인에게 인도되고 환가되는 배당에 충족되지만, 제13장 사건에서는 채무자는 장래의 수입으로부터 변제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산을 남기는 것이 가능하다.⁶⁸⁾

그러나 제7장 사건에서는 주거나 자동차 등의 재단면제재산에 대한 담보권은 소멸하지 않고, 채무자가 그 보유를 계속하려고 하면, 개별적으로 담보권자와 교섭하여 그 담보채권의 변제방법에 관해서 화해하거나, 화해가 성립하지 않으면 일괄 현금변제하는 외에는 방법이

67) H.R. Rep. No. 595, 95th Cong., 1st Sess. 118 (1977) 참조.

68) 그러나 압도적 다수의 제7장 사건이 무자산 사건(no assets case)이거나 자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관재비용조차 보상할 수 없는 명목적 자산 사건(nominal assets case)이다. 제7장 사건에서도 재단면제재산(exemption)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의 재산을 남기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점을 강조하는 것은 실제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없지만, 제13장 사건에서는 담보채무의 분할변제의 불이행에 의하여 전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있어도, 불이행분을 계획에 근거하여 분할변제하는 것에 의하여 치유되고, 기한의 이익 상실전의 상태로 복원한 후에, 계획안에 기초하여 남은 담보채무를 분할 변제하는 것이 가능하다.⁶⁹⁾ 계획안의 조항은 그 인가에 관한 소정의 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 한 담보채권자의 동의를 얻을 필요도 없다.

두 번째 이점은 면책에 관한 것이다.⁷⁰⁾ 우선, 제7장 사건에 관하여 적용되는 면책불허가사유⁷¹⁾는 제13장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또 인가계획에 의한 변제를 완료하지 않았던 경우에도 3년간에 걸쳐 계획에 의한 변제를 계속하고 있으면, 부득이한 사정 기타 소정의 사유가 있으면, 계획에 기하여 남은 지분이 가능하지 않아도 면책을 받을 수 있는 등의 이점이 있다.⁷²⁾ 또한, 제7장 사건에서는 이전의 건에서 면책을 받은 경험이 있는 자는 전건 개시일 후 6년 이내에 개시된 이후의 사건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면책을 받을 수 없지만, 제13장 사건에서는 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원래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 것은 예외적으로 하고, 면책을 받은 직후에 다시 과다한 채무를 부담할 정도로 새로운 여신을 획득하는 것은 쉽지 않고, 6년 이내에 다시 신청을 하는 것도 드문 경우이므로 이들 이점은 어느 것도 제13장 사건의 활용을 특별하게 할 큰 이점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개인신용평가의 관점에서도 제7장의 청산절차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제13장의 채무정리

69) 또한 주거가 담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래의 계약에 의한 변제조건에 따라 변제를 계속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래의 변제조건에 의한 최종변제기한이 계획안에 의한 최종변제기보다도 빨리 도래하는 때는 계획안에 의한 최종변제기까지 분할변제의 최종기한을 연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70) 예전에는 제7장 사건의 비면책채권의 다수는 제13장 사건에서 면책가능하였던 것이 이점이었다고 할 수 있었지만, 이러한 점은 현재는 거의 사라져버린 상태여서 이를 이점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71) 11 U.S.C.A. § 727(a) (West 2011).

72) 11 U.S.C.A. § 1328(b) (West 2011). hardship discharge라고 한다.

절차를 활용하는 편이 채무자에게 유리하게 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많은 경우 채무자는 제13장의 절차를 이용하면서 수년에 걸쳐 많은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불하기 보다는 제7장의 절차를 활용하여 즉시 청산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 제7장 절차를 활용하고자 하는 전형적인 채무자는 재단면제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장래에 상당한 수입이 기대되는 자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채무자는 파산사건이 개시되기 이전의 채무가 면책됨으로 자신의 현재의 재산을 포기하는데 있어 잃을 것이 별로 없으며, 장래의 수입에 대한 기대가 훨씬 높게 된다.

2

1. 2005년 연방파산법 개정 배경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론적·제도적으로는 제13장 절차의 활용이 선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소비자 채무자는 제7장 절차를 활용하려는 선호도가 높았고, 이를 배경으로 연방 파산법은 2005년 파산절차의 남용 규제를 주요내용으로 크게 개정되었다.⁷³⁾ 2005년 개정의 핵심은 “2005년 파산남용방지 및 소비자 보호법”을 새로이 성립시켜, 변제자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채무자에 대하여 제7장 절차를 이용할 수 없게 하기 위하여 제707조(b)⁷⁴⁾에 파산절차 남용의 규제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두는 것이었다. 실제로 소비자 채무자에 의한 제7장의 남용에 관한 우려에 대한 목소리와 남용규제와 관련한 논쟁은 지난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즉, 소비자 신용 산업을 중심으로 제13장 정리절차에 대한 제도적, 이론적 이점은 실질

73) 실제로 제7장에 대한 채무자들의 실질적 선호도는 1984년 법개정에서 “실질적 남용(substantial abuse) 조항을 두게 된 계기가 되었고, 이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2005년 개정 연방파산법의 변제자력조사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Charles J. Tabb, *Bankruptcy Law Principles, Policies and Practice* 108 (3d ed. 2010).

74) 11 U.S.C.A. § 707(b) (West 2011).

적으로 대부분의 채무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제7장 청산절차의 이점이 훨씬 크다는 주장으로 제13장에 의한 정리절차를 활용할 수 있는 채무자들이 실제로는 대부분 제13장을 선택하지 않고 제7장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대의견 또한 존재하였다. 이들 반대의견의 요지는 제7장 청산절차의 남용에 관한 내용은 지나치게 과장된 것이며, 이러한 과장의 이면에는 소비자 신용산업의 자체적인 조사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실제로 제7장의 청산절차를 선택하는 많은 소비자 채무자들은 보통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의한 결과에 따라 실질적인 경제적 곤궁에 처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제7장에 의한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을 통해 구제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⁷⁵⁾

1984년 이전의 연방파산법에서는 남용을 근거로 법원이 사건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한 조문이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채무자가 제13장에 의한 절차를 선택하지 않고 제7장에서의 청산절차를 신청함으로써 손쉬운 면책을 얻고자 한다고 생각되는 경우, 해당 사건을 기각하기 위한 근거는 제707조 (a)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⁷⁶⁾ 1984년 의회는 제707조의 (b)를 추가하여, 법적 구제를 부여하는 것이 제7장 절차를 “실질적으로 남용(substantially abuse)”하게 되는 경우 소비자 채무를 주로 하는 개인에 의한 제

75) 제7장 절차의 남용의 규제와 관련한 논의의 상세는 Marranne B. Culhane & Michaela M. White, *Taking the New Consumer Bankruptcy Model for a Test Drive: Means-Testing Real Chapter 7 Debtors*, 7 Am. Bankr. Inst. L. Rev. 27 (1999); Charles J. Tabb & Jillian McClelland, *Living with the Means Test*, 31 S.I.U.L.J. 463 (2007) 참조.

76) 11 U.S.C.A. § 707(a) (West 2011).

(a) The court may dismiss a case under this chapter only after notice and a hearing and only for cause, including-- (1) unreasonable delay by the debtor that is prejudicial to creditors; (2) nonpayment of any fees or charges required under chapter 123 of title 28; and (3) failure of the debtor in a voluntary case to file, within fifteen days or such additional time as the court may allow after the filing of the petition commencing such case, the information required by paragraph (1) of section 521(a), but only on a motion by the United States trustee.

7장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⁷⁷⁾ 제707조 (b)항은 비록 소비자 채무자가 제13장에서의 절차를 이행할 능력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제7장 절차의 신청을 하는 경우 남용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지만, 이 규정의 배경은 제7장의 청산절차의 남용을 규제하고자 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 규정을 추가하면서 의회는 채무자가 제13장에서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관하여 법원이 심사하도록 하는 명백하고 확실한 조항을 담지 않고 보다 완화된 사항을 규정하였다. 주로 소비자 채무를 지는 개인들에 대하여 적용되는 동 조항은 남용이 실질적일 것을 요구하며, 법적 구제의 부여를 추정하는 뜻을 담고 있다.

“실질적 남용”에 관하여 연방파산법은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법원은 제7장의 청산절차의 신청이 실질적인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재량에 의한 판단을 하게 된다. 일부 법원은 제13장의 절차에서 보다 많은 변제를 할 수 있는 채무자의 능력 자체를 기각에 대한 근거로 취급하였다. 한편, 또 다른 법원들에서는 변제능력을 고려하는 동시에 실질적인 남용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결정하기 위하여 전체적인 상황을 검토하였다. 다수의 법원은 의회가 채무자에게 제7장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보고, 제707조의 (b)항에서 일반적으로는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채무자에 우호적인 추정에 의하여 심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장에 의한 절차의 신청을 기각하는 데 적극적이지 않았다.

제7장의 청산절차의 남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제707조의 (b)항을 개정하는가에 관한 문제는 1994년 국가파산법검토위원회에서 의견이 나

77) Bankruptcy Amendments and Federal Judgeship Act of 1984, Pub. L. No. 98-353, 98 Stat. 333 (1984). (“(b) After notice and a hearing, the court, on its own motion and not at the request or suggestion of any party in interest, may dismiss a case filed by an individual debtor under this chapter whose debts are primarily consumer debts if it finds that the granting of relief would be a substantial abuse of the provisions of this chapter. There shall be a presumption in favor of granting the relief requested by the debtor.”).

뉘어졌다. 다수의 위원들은 제7장에 의한 구제에 관한 추가적인 제한을 부과하는 것에 반대하였으나, 일부 위원들은 의회가 소비자 채무자들이 장래의 수입으로 제13장 절차에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변제자력(means)이 있는 경우 제7장 절차에서 이들을 제외할 수 있는 변제자력조사를 강제하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의회의 다수 의원들은 위원회의 소수의 의원들의 의견에 공감을 표명하였으며, 위원회가 1997년 관련 보고서를 제출한 직후 1998년 변제자력조사를 포함하는 파산개혁법안을 제안하였다.⁷⁸⁾ 그러나 동 법안의 통과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2005년에서야 이루어지게 되었다.⁷⁹⁾

제707조 (b)에 대한 개정은 2005년 개정 파산법상 가장 논란이 많았던 내용이었다. 동 항의 개정에 대해 다수의 학자들은 동 조항의 개정은 의도하였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며, 소비자 파산 사건에 대한 행정비용을 증가시키는 반면, 연방파산법을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구제가 필요한 자들에게 어려움을 야기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⁸⁰⁾ 한편, 이러한 정책적인 우려와는 별도로, 개정된 제707조 (b)는 길고 난해한 자구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이유로 법 개정 이후 대부분의 법원들이 일관적이고 합

78) National Bankruptcy Review Commission Final Report, Bankruptcy: The Next Twenty Years (1997) 참조.

79) 제7장 청산절차에 의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소비자 채무자를 제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1994년 국가파산법심사위원회(National Bankruptcy Review Commission)의 위원들을 설득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나 위원회 위원 중 4인은 제7장과 제13장 사이에서 채무자의 선택을 제한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을 위하여 변제자력조사(a means test)를 활용하여야 한다고 하는 별도의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즉, 변제자력조사를 거쳐 채무자의 가용소득이 제13장 절차에서 채무자에게 변제를 할 만큼 충분하다고 여겨지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채무자의 제7장 절차의 활용이 거부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었다. 이들 소수 위원들의 의견은 의회에 변제자력조사의 필요성에 관한 공감대를 불러일으켰고, 1998년을 시작년으로 하는 다음 회기에서 법안으로 상정되었다. 그러나 변제자력조사의 도입에 대한 법안은 이후 매 회기에 제안되었으나 법안 통과에는 실패하고 최종적으로 지난 2005년 법안이 통과되었다.

80) 예를 들어, Eugene R. Wedoff, Means Testing in the New § 707(b), 79 Am. Bankr. L.J. 230, 277-281 (2005) 참조.

리적인 방법으로 동 조항을 적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이에는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2005년 연방파산법 개정의 주요내용

2005년 개정 파산법에서는 이전의 제707조(b)에 변제자력조사가 추가되었다.

첫째, 제707조(b)에서는 더 이상 “실질적인 남용(substantial abuse)”을 요구하지 않으며, 단순히 “남용(abuse)”이라는 표현으로 자구를 수정하였다.⁸¹⁾ 이러한 변화는 미국 연방 파산법상 채무자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에 일정한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또한, 개정전 제707조(b)에서 규정하고 있던 일반적으로 남용이 추정되지 않는다고 하는 규정이 삭제되었다는 것은 법의 이러한 태도변화를 재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다.⁸²⁾

둘째, 2005년 개정 연방파산법은 파산절차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제7장 절차의 신청의 기각을 방해하던 또 다른 장애물을 제거했다. 즉, 이전 제707조(b)하에서의 기각은 법원의 직권 또는 연방관재인의 신청에 의해 소비자채무자의 자발적 신청에 따라 개시된 제7장 사건에 대하여 그 구제를 인정하는 것이 제7장 규정의 실질적 남용에 해당한다

81) 11 U.S.C.A. § 707(b)(1) (West 2011).

After notice and a hearing, the court, on its own motion or on a motion by the United States trustee, trustee (or bankruptcy administrator, if any), or any party in interest, may dismiss a case filed by an individual debtor under this chapter whose debts are primarily consumer debts, or, with the debtor's consent, convert such a case to a case under chapter 11 or 13 of this title, if it finds that the granting of relief would be an abuse of the provisions of this chapter. In making a determination whether to dismiss a case under this section, the court may not take into consideration whether a debtor has made, or continues to make, charitable contributions (that meet the definition of “charitable contribution” under section 548(d)(3)) to any qualified religious or charitable entity or organization (as that term is defined in section 548(d)(4)) (emphasis added).

82) Bankruptcy Amendments and Federal Judgeship Act of 1984, Pub. L. No. 98-353, 98 Stat. 333 (1984)에서 규정되었던 “(b) ... There shall be a presumption in favor of granting the relief requested by the debtor.” 채무자에 우호적인 추정규정이 삭제되었다.

고 판단한 때 그 사건을 기각하여 종료시키는 것이 가능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기각의 신청은 직권 또는 연방관재인의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하였다. 그러나 개정 파산법에서는 채무자의 연간소득이 중앙값에 의한 가족 소득(median family income)보다 낮지 않다면, 관재인이나 이해관계 당사자에 의한 기각신청도 가능케 하고 있다.

셋째, 제707조(b)의 목적은 남용적인 제7장 신청에 대한 기각을 허용함으로써 제7장에 의한 구제수단에 대한 게이트키퍼(gatekeeper)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즉, 소비자 채무자의 재정적 능력이 제707조의 변제자력조사에서 규정한 금액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남용을 추정하게 된다. 따라서 제7장 절차를 계속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여야 한다. 한편,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변제자력조사에서 규정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추정은 발생하지 않고, 이 경우 신청의 기각은 채무자의 악의나 전체적 상황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제707조(b)항의 실질적 적용은 개략적으로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이루어진다. 우선 채무자가 제707조(b)(6)⁸³⁾과 (7)⁸⁴⁾에서 규정된 소득기준

83) 11 U.S.C.A. § 707(b)(6) (West 2011).

Only the judge or United States trustee (or bankruptcy administrator, if any) may file a motion under section 707(b), if the current monthly income of the debtor, or in a joint case, the debtor and the debtor's spouse, as of the date of the order for relief, when multiplied by 12, is equal to or less than--

(A) in the case of a debtor in a household of 1 person, the median family income of the applicable State for 1 earner;

(B) in the case of a debtor in a household of 2, 3, or 4 individuals, the highest median family income of the applicable State for a family of the same number or fewer individuals; or

(C) in the case of a debtor in a household exceeding 4 individuals, the highest median family income of the applicable State for a family of 4 or fewer individuals, plus \$625 per month for each individual in excess of 4.

84) 11 U.S.C.A. § 707(b)(7) (West 2011).

(A) No judge, United States trustee (or bankruptcy administrator, if any), trustee, or other party in interest may file a motion under paragraph (2) if the current monthly income of the debtor, including a veteran (as that term is defined in

에 해당하는 경우 사건의 기각을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제한되며, 납용의 추정은 발생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해당 사건은 제 707조(b)(3)⁸⁵⁾하에서 제7장의 신청이 실제로 파산법의 납용이라고 판단

section 101 of title 38), and the debtor's spouse combined, as of the date of the order for relief when multiplied by 12, is equal to or less than--

(i) in the case of a debtor in a household of 1 person, the median family income of the applicable State for 1 earner;

(ii) in the case of a debtor in a household of 2, 3, or 4 individuals, the highest median family income of the applicable State for a family of the same number or fewer individuals; or

(iii) in the case of a debtor in a household exceeding 4 individuals, the highest median family income of the applicable State for a family of 4 or fewer individuals, plus \$625 per month for each individual in excess of 4.

(B) In a case that is not a joint case, current monthly income of the debtor's spouse shall not be considered for purposes of subparagraph (A) if--

(i)(I) the debtor and the debtor's spouse are separated under applicable nonbankruptcy law; or

(II) the debtor and the debtor's spouse are living separate and apart, other than for the purpose of evading subparagraph (A); and

(ii) the debtor files a statement under penalty of perjury--

(I) specifying that the debtor meets the requirement of subclause (I) or (II) of clause (i); and

(II) disclosing the aggregate, or best estimate of the aggregate, amount of any cash or money payments received from the debtor's spouse attributed to the debtor's current monthly income.

(c)(1) In this subsection--

(A) the term "crime of violence" has the meaning given such term in section 16 of title 18; and

(B) the term "drug trafficking crime" has the meaning given such term in section 924(c)(2) of title 18.

(2) Except as provided in paragraph (3), after notice and a hearing, the court, on a motion by the victim of a crime of violence or a drug trafficking crime, may when it is in the best interest of the victim dismiss a voluntary case filed under this chapter by a debtor who is an individual if such individual was convicted of such crime.

(3) The court may not dismiss a case under paragraph (2) if the debtor establishes by a preponderance of the evidence that the filing of a case under this chapter is necessary to satisfy a claim for a domestic support obligation.

85) 11 U.S.C.A. § 707(b)(3) (West 2011).

되는 경우에만 기각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변제자력조사가 규정된 제707조(b)(2)하에서 남용의 추정이 발생하게 되고, 또한 추정의 번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3. 변제자력조사(means test)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707조(b)(1)에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법원의 직권이나, 연방 관재인, 관재인, 또는 이해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주로 소비자 채무를 가진 개인이 제7장의 청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법원이 법적 구제를 부여하게 되는 것이 제7장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개인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⁸⁶⁾

그리고 제707조(b)(2)에서는 일정한 상황 하에서는 객관적, 수치적으로 남용을 추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파산납용에 대한 규제를 보다 손쉽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707조(b)(2)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식(formula)에 의하면, 채무자의 가용소득(disposable income)이 제13장 절차에서의 채무변제계획을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 경우에 추정이 이루어지게 되며 이것이 채무자의 변제자력조사의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의 가용소득이 공식에 의하여 개정 연방파산법상 규정된 금액을 넘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제7장의 규정들을 남용한다고 하는 추정이 발생하게 된다. 채무자가 이러한 추정을 번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07조(b)(1)하에서의 기각에 관한 사항에 적

In considering under paragraph (1) whether the granting of relief would be an abuse of the provisions of this chapter in a case in which the presumption in paragraph (2)(A)(i) does not arise or is rebutted, the court shall consider--

(A) whether the debtor filed the petition in bad faith; or

(B) the totality of the circumstances (including whether the debtor seeks to reject a personal services contract and the financial need for such rejection as sought by the debtor) of the debtor's financial situation demonstrates abuse.

86) 11 U.S.C.A. § 707(b)(1) (West 2011) 참조.

용된다. 제707조(b)(2)(c)에서는 추정이 적용될지를 보여주는 계산(calculations)과 함께 현재의 월간소득(current monthly income)에 관한 정보를 제시하기 위해서 제521조에서 규정한 채무자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목록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⁸⁷⁾

2005년 개정 파산법 이전 제707조(b)에서는 실질적인 남용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에 법원은 상당한 재량을 행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법에서는 의도적으로 법원의 재량을 축소하여, 규정에 의한 공식하에서 채무자의 수입과 지출의 계산 결과 채무자의 가용소득이 제13장 절차에서의 채무변제계획을 이행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남용을 추정해야 한다(“shall” presume abuse exists)고 하는 재량을 축소시키는 조사를 도입하였다. 제707조(b)(2)(A)(i)에서 규정하고 있는 남용의 추정을 결정하는 공식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⁸⁸⁾

1. 제101조(10)(A)⁸⁹⁾에서 정의된 채무자의 현재의 월간 소득(current monthly income)을 계산

87) 11 U.S.C.A. § 707(b)(2)(c) (West 2011).

(C) As part of the schedule of current income and expenditures required under section 521, the debtor shall include *a statement of the debtor's current monthly income, and the calculations* that determine whether a presumption arises under subparagraph (A)(i), that show how each such amount is calculated. (emphasis added).

88) 11 U.S.C.A. § 707(b)(2)(A)(i) (West 2011).

(2)(A)(i) In considering under paragraph (1) whether the granting of relief would be an abuse of the provisions of this chapter, the court shall presume abuse exists if the debtor's current monthly income reduced by the amounts determined under clauses (ii), (iii), and (iv), and multiplied by 60 is not less than the lesser of--

(I) 25 percent of the debtor's nonpriority unsecured claims in the case, or \$7,025, whichever is greater; or

(II) \$11,725. (emphasis added).

89) 11 U.S.C.A. § 101(10A) (West 2011).

2. 월간소득에서 채무자의 월간 비용(the debtor's monthly expenses)을 공제(월간 비용은 (b)(2)(A)(ii), (iii)와 (iv)하에서 허락된 금액의 합계로 결정됨)
3. 위에서 결정된 숫자는 채무자의 순 월간수입(net monthly income)을 나타냄
4. 3에서 나온 숫자에 60을 곱하여, 5년간의 금액으로 채무자의 순 가용소득(net disposal income)을 계산
5. 60개월치의 가용소득을 법에서 규정된 기준과 비교하여, 가용소득이 (a) 해당 사건에서 채무자의 우선권 없는 무담보채권의 25퍼센트 또는 7,025달러 중 큰 금액 또는 (b) 11,725달러 중 적은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납용이 추정된다.⁹⁰⁾

(10A) The term “current monthly income”--

(A) means the average monthly income from all sources that the debtor receives (or in a joint case the debtor and the debtor's spouse receive) without regard to whether such income is taxable income, derived during the 6-month period ending on--

(i) the last day of the calendar month immediately preceding the date of the commencement of the case if the debtor files the schedule of current income required by section 521(a)(1)(B)(ii); or

(ii) the date on which current income is determined by the court for purposes of this title if the debtor does not file the schedule of current income required by section 521(a)(1)(B)(ii); and

(B) includes any amount paid by any entity other than the debtor (or in a joint case the debtor and the debtor's spouse), on a regular basis for the household expenses of the debtor or the debtor's dependents (and in a joint case the debtor's spouse if not otherwise a dependent), but excludes benefits received under the Social Security Act, payments to victims of war crimes or crimes against humanity on account of their status as victims of such crimes, and payments to victims of international terrorism (as defined in section 2331 of title 18) or domestic terrorism (as defined in section 2331 of title 18) on account of their status as victims of such terrorism.

90) 2008년 10월 13일 이전과 이후의 동 규정에 의한 기준금액은 아래의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변경되었다. 11 U.S.C.A. § 104 (West 2011) 참조.

이러한 계산에 따라 4단계에서의 채무자의 가용소득이 5단계에서 계산된 금액과 같거나 상회하는 경우에 채무자는 변제자력조사에서 실패하게 되고, 남용의 추정이 있게 된다. 이때 채무자가 제7장 신청의 기각을 피하기 위해서는 추정의 번복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앞에서 간략히 설명한 변제자력조사에 관하여 보다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채무자의 현재 월 수입

채무자의 현재 월간 수입은 파산신청 이전 6개월간 모든 출처에서 나오는 채무자의 월간 수입의 평균을 의미한다.

(2) 채무자의 월간 비용

(b)(2)(A)(ii), (iii)과 (iv)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무자의 월간 비용은 채무자의 현재 월 수입에서 이를 공제한 후 순가용소득을 계산하기 위하여 사용되며, 이들 규정은 매우 제한적이다. 실제로 이들 규정은 채무자가 생활비로 주장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하여 매우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지출비용(expense allowance)은 복잡하기 때문에 해석의 문제를 야기한다. 이는 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다. 생활비(living expense), 담보부채무의 변제(secured debt payments), 그리고 우선권있는 채무의 변제(priority debt payments). 생활비

707(b)--dismissal of a case or conversion to a case under chapter 11 or 13 (means test):	Dollar amount to be adjusted	New (adjusted) dollar amount
(1)--in paragraph (2)(A)(i)(I)	\$6,575	\$7,025
(2)--in paragraph (2)(A)(i)(II)	\$10,950	\$11,725
(3)--in paragraph (2)(A)(ii)(IV)	\$1,650	\$1,775
(4)--in paragraph (2)(B)(iv)(I)	\$6,575	\$7,025
(5)--in paragraph (2)(B)(iv)(II)	\$10,950	\$11,725
(6)--in paragraph (5)(B)	\$1,100	\$1,175
(7)--in paragraph (6)(C)	\$575	\$625
(8)--in paragraph (7)(A)(iii)	\$575	\$625

의 상한선은 미국 연방 국세청(IRS)에서 공표한 국가표준 및 지역표준에 따라 정해져 있다.⁹¹⁾

채무자가 이 범주 내에서 실제로 발생한 비용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목록에 있는 비용의 일부를 주장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법원의 입장은 나뉘어져 있다. 예를 들어, 위의 기준들은 자동차 소유 비용에 관한 일정한 비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부 법원에서는 비용에 있어 이러한 금액을 포함하는데 있어 채무자가 자동차 론(loan)이나 리스(lease)를 하고 있어 실제로 변제하고 있는 경우에만 허락하고 있다. 반면, 다른 법원에서는 동 항의 평면적인 의미와 정책은 개인적인 사정과 상관없이 표준화된 비용을 채무자가 포함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한다.⁹²⁾

(3) 최종 계산

채무자의 현재 월간 수입과 공제되는 월간 비용이 결정된 후, 수입에서 비용을 제한 순월간잉여분(가용소득)이 제13장 절차에서 채무자

91) <http://www.irs.gov/individuals/article/0,,id=96543,00.html> 참조 (last visited June 20, 2011). 이들 표준화된 기준의 일부는 전국적으로 적용되며, 일부는 지역적인 상황을 고려하게 된다. 연방 국세청은 이들 표준화된 지출비용을 국세청 스스로의 목적에 의하여 작성하고 공표한다. 즉, 체납된 세금의 납부를 위한 변제계획에서 매월 지불해야 할 비용을 산정하기 위하여 동 기준들은 활용되는 것이다. 의회는 동일한 기준을 제707조(b)의 목적에서 생활비에 대한 채무자의 주장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결정했다. 이들 기준은 주택, 제세공과금, 교통, 식비, 의복, 기타 채무자의 부양과 복지를 위한 필요비를 포함한다. 이들 비용을 계산하는데 있어 채무자는 채무자의 실제적 비용보다 기준에 계상된 금액이 높다고 하더라도 이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는 반대의 상황, 즉 채무자의 실제비용이 기준보다 높은 경우에는 이들 기준에 제한되어야 한다.

92) *In re Ross-Tousey*, 549 F.3d 1148 (7th Cir. 2008). 연방 국세청에서 허락한 비용에 대하여 제707(b)(2)에서는 채무자가 추가적으로 포함할 수 있는 제한적인 형태의 비용을 인정하고 있다. 이 중 일부는 일반적으로 적용이 가능하지만, 일부는 특별한 상황에서만 채무자에게 인정된다. 예를 들어, 모든 채무자는 합리적으로 필요한 건강 및 장애보험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예산의 목적은 제13장 사건에서 채무자의 가용소득이 얼마나 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월간 비용을 계산하는 때에는 제13장 절차에서 발생할 담보부 채권과 우선순위가 있는 채권과 관련한 변제와 비용을 고려한다.

가 관재인에게 매달 변제가능한 금액으로 된다. 이하의 소비자 프로젝트의 수행기간이 2007년이란 것을 감안하여 2007년 기준으로 순월간잉여분에 대한 최종 계산을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순월간잉여분이 109.58달러 또는 그 이하인 경우, 채무자의 60개월치 가용소득은 6,575달러 또는 그 이하가 된다. 이 경우 채무자는 변자자력조사를 만족시키게 되며, 납용의 추정은 발생하지 않게 된다.
2. 순월간잉여분이 182.50달러 또는 그 이상인 경우, 채무자의 60개월치 가용소득은 10,950달러를 초과하게 된다. 따라서 채무자는 변제자력조사를 만족시키지 못하게 되며, 납용의 추정이 있게 된다.
3. 순월간잉여분이 109.58달러와 182.50달러 사이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60개월치 가용소득이 우선순위 없는 무담보채무의 25%를 상회하는 경우 납용의 추정이 발생하게 된다.

제 3 장 2005년 개정 연방파산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2007 소비자 파산 프로젝트

1 2007

2005년 개정 연방파산법의 핵심적인 내용은 종래 판사의 넓은 재량에 의하여 제7장의 청산절차의 실질적 남용을 판단하던 것에서 소득에 관한 객관적, 수치적인 요건을 설정하고 요건에서 규정한 금액을 상회하는 가용소득을 가지는 채무자들(소위 “can pay” debtors)에 대하여 제7장의 파산절차에 대한 남용의 추정효를 부여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2005년 개정에서의 취지는 남용규제를 위한 핵심적인 도구로서 변제자력조사를 도입하여 제7장의 청산절차에 대한 남용을 금지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입법목적은 달성되었는가? 미국의 경제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 개정 연방파산법 개정 이후, 이전에 비해 파산 신청자들의 수가 827,000건으로 절반정도로 급감하였다.⁹³⁾ 법개정 이후의 급격한 파산 신청자 수의 감소는 2005년 개정 연방파산법이 성공적이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2005년 개정 연방파산법의 목적은 단지 파산신청을 줄이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설계된 것이 아니라 파산절차를 남용한다고 알려진, 즉 변제자력이 있는 고소득 채무자들을 걸러내기 위해 개정되었고, 파산 숫자 감소 조치가 아니라 파산 남용을 방지하고자 마련했던 조치였다.⁹⁴⁾

93) Robert M. Lawless et al., *Did Bankruptcy Reform Fail - An Empirical Study of Consumer Debtors*, 82 Am. Bankr. L. J. 349, 351 (2008).

94) 145 Cong. Rec. 8509 (1999) (statement of Rep. Gekas); H.R. Rep. No. 109-031 (I), at 92 (2005); 151 Cong. Rec. S1856 (daily ed. Mar. 1, 2005) (statement of Sen. Grassley) (“So that I am crystal clear, people who do not have the ability to repay their debts

개정 연방파산법이 파산절차 남용을 방지하고자 한 법개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는지, 법개정이 가구와 소비자(families and consumers)를 위한 파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한 실증적인 조사가 2007년 소비자파산 프로젝트(Consumer Bankruptcy Project)란 명칭으로 수행되었다.⁹⁵⁾ 동 프로젝트에서 수행된 결과는 “파산법 개혁은 실패하였나? 소비자 채무자에 관한 실증적 연구(Did Bankruptcy Reform Fail? An Empirical Study of Consumer Debtors)”라는 제하(題下)의 보고서로 출판되었다.⁹⁶⁾

이 보고서는 의회가 2005년 연방파산법을 개정함에 있어 소위 변제 가능한 파산신청자들을 배제하기 위한 것에 중점을 둔 것에 주목하였다. 실제로 동 법의 개정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다수의 고소득 기업, 개인, 가구들은 이들의 변제능력과 상관없이 면책으로 인한 혜택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동 보고서는 연방파산법이 2005년 개정된 이후 파산신청자들은 재정적 위기로 고통 받고 있는 전형적인 미국 가구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밝혀냈다.⁹⁷⁾

다시 말해, 동 연구에서는 첫째, 동 법의 개정은 고소득 남용자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대신 모든 채무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

can still use the bankruptcy system as they would have before. The bill clearly provides that people of limited income can still file under chapter 7 and get that fresh start ... so their debts can be wiped away, as is done right now.”) 참조.

95) 동 프로젝트를 수행한 학자들은 5명의 로스쿨 교수와 1명의 사회학자로 다음과 같다. Robert M. Lawless of the University of Illinois College of Law; Angela K. Littwin of the University of Texas School of Law; Katherine M. Porter of both the University of Iowa School of Law and Harvard University; John Pottow of the University of Michigan School of Law; Deborah Thorne (the sole sociologist) of Ohio University; and Elizabeth Warren of Harvard University.

96) 이 보고서는 Harvard, Michigan, Texas, Illinois 그리고 Iowa 대학 등에서 출판되었을 뿐만 아니라, 2008년 미국파산법저널 제28권에서 출판되었다. Lawless et al., 앞의 논문 참조.

97) Lawless et al., 앞의 논문, 353면.

이라고 결론내리고 있다. 둘째, 채무자들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단지 보다 많은 채무를 지게 되었고, 따라서 2005년 연방파산법의 개정이전과 이후에 대부분의 파산 채무자들은 자신들의 소득수준보다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을 계기로 파산신청을 하게 된 보통의 미국 가구들이라고 결론내리고 있다.⁹⁸⁾

이하에서는 앞서 언급한 2007년 소비자파산 프로젝트의 결과보고서를 중심으로 연구설계 및 연구결과를 살펴봄으로써, 법목적 달성 여부를 확인하는 사후적 입법평가에서 사회과학 조사방법론의 실제적 적용의 모습을 확인한다.⁹⁹⁾

2

이 프로젝트에서는 법개정의 실효성을 살피고자 2005년 개정 연방파산법 이후 파산 가구들의 전국 규모 데이터를 수집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검증은 실시하였다. 프로젝트의 검증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내용은 2005년 이후 “누가” 파산을 신청했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파산절차의 신청이 감소한 것이 파산절차의 남용자들이 실제 감소했기 때문인지 혹은 변제자력조사가 무작위적이고 임의적으로 이루어져 도움이 필요한 가구들까지 배제되었는지 살펴봄으로써 입법목적의 달성 여부를 검증코자 한 것이다.¹⁰⁰⁾

2005년 개정된 미 연방 파산법은 변제자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채무자에 대하여 제7장 절차를 이용할 수 없게 구성되었다. 2007년 프로젝트는 미국의 2005년 연방 파산법 개정 후 2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한 2007년의 소비자 파산신청 가구들의 데이터를 토대로 이전 시점의 데

98) Lawless et al., 앞의 논문, 353면.

99) 동 보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연구설계 및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내용의 논리적 전개 등을 고려하여 보고서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재구성하였음을 밝힌다.

100) Lawless et al., 앞의 논문, 352면.

이더들과 비교하여 파산절차의 남용의 방지라는 법개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소득조사를 기반으로 한 자산조사를 통해 2005년 개정 연방파산법이 변제가능한 채무자들과 그렇지 않은 채무자들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 2007년 파산신청 데이터들을 통해 그 성과를 평가하고자 했다. 이를 위하여 동 프로젝트는 2007년 소비자 파산 프로젝트(Consumer Bankruptcy Project IV: 소비자파산 프로젝트 IV)를 실시하여 데이터를 구축함과 동시에, 1981년, 1991년, 그리고 2001년에 실시된 소비자 파산 프로젝트(소비자파산 프로젝트 I - III)의 데이터들과 비교·분석하는 것으로 설계되었다. 2007년 소비자 파산 프로젝트의 데이터들과 비교·분석한 기존의 프로젝트들은 지속적으로 시계열 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설계된 조사가 아니었다.¹⁰¹⁾ 이러한 한계를 고려하여 2007년 소비자파산 프로젝트에서는 이전 데이터들과의 비교·분석은 각 프로젝트들에서 수집된 여러 변수들 가운데 파산신청 가구들의 소득, 자산, 채무 등과 같은 공통된 데이터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비교·분석하였다.

1. 데이터 수집방법 및 연구절차¹⁰²⁾

일부 지역을 표본으로 하여 얻은 이전 소비자 파산 프로젝트 데이터들과 달리 2007 소비자 파산 프로젝트는 미국 최초로 전국 규모의 무작위 표본으로부터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다. 일별 파산 신청 기록을 가지고 있는 법원 전자 기록 자동 접속(Automated Access to Court

101) 일반적으로 시계열 분석을 위한 데이터 세트를 구성하기 위한 조사를 위해서는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이 선행되는 한편, 이후 조사에서도 동일 내지 유사한 대상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조사 내용 부분에서도 기본적으로 동일 문항을 유지하되 시대 변화를 반영하여 일부 가감이 이루어지기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02) 데이터 수집 및 동 프로젝트 수행에 관한 상세한 방법론은 Lawless et al., 387-398면을 참조한 것이다.

Electronic Records: AACER)¹⁰³⁾을 통해 2007년 2월 첫 주부터 3월까지 5주간 파산을 신청한 채무자들에 대한 전국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표본으로 삼은 관할별 파산법원의 파산 신청 채무자들의 법원 기록은 법원 전자기록 공공접속(Public Access to Court Electronic Records: PACER) 시스템¹⁰⁴⁾을 통해 확보하였다.

1981년, 1991년, 2001년의 소비자 파산 프로젝트를 통해 얻어진 데이터들은 인플레이션 등 달러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고려하여 모두 2007년 가치로 환산한 후 2007년 소비자 파산 프로젝트 데이터들과 비교·분석하였다.¹⁰⁵⁾ 2007년 데이터들은 무작위로 표집된 표본이 실제 전국 인구 비율을 반영하기 위해 일부 데이터에 가중치를 두어 데이터의 엄밀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2007년 소비자 파산 프로젝트의 세부적인 데이터 수집 및 진행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 ① 미국 전역에서 신청되는 매주 12,500건-15,000건의 파산 사례들 중 제7장과 제13장 절차를 이용하고자 한 개인 신청자들만을 대상으로 삼았다. 2월 초부터 5주간 매주 1,000건씩 총 5,000건의 사례를 무작위로 선정하였다.
- ② 선정된 채무자 가구로 8페이지 정도의 설문지를 우편으로 발송하였다.¹⁰⁶⁾
- ③ 선정가구들로부터 얻은 응답을 통해 약 2,500건의 사례를 수집하고 코딩 작업을 거쳐 데이터베이스화 하였다.
- ④ 응답된 사례들에 한하여 법원 기록물들을 이용하여 각각의 응답자들에 대한 데이터를 기록하였다.

103) <http://AACER.com> (last visited June 24, 2011).

104) Administrative Office of the U.S. Courts: PACER Service Center, <http://pacer.psc.uscourts.gov> (last visited June 24, 2011).

105) 사용된 인플레이션 적용 수치는 “소비자 가격 지표-모든 도시 소비자-비분기별 적용”에서 2007년 상반기였다.

106) 2007년 소비자파산 프로젝트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부록을 참조.

- ⑤ 응답자와 비응답자 사이에 특성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검증작업을 실시하였다.
- ⑥ 1981년, 1991년, 2001년 파산신청 채무자들로부터 수집한 데이터(CPB I - III)와 2007년 수집된 데이터들(CBP IV) 가운데 유사항목을 비교하였다.
- ⑦ 추가로 2007년 응답자들 가운데, 자발적으로 인터뷰에 응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이들(약 1,000여 건)을 대상으로 파산 신청 후 1년 이내의 기간에 전화인터뷰를 실시하였다.
- ⑧ 전화 인터뷰 결과는 2001 인터뷰 데이터들과 비교·분석하였다.

(1) 시기별 소비자파산 프로젝트 데이터 특성과 방법 비교¹⁰⁷⁾

1981년, 1991년, 2001년, 그리고 2007년에 실시된 소비자 파산 프로젝트(CBP I - IV) 데이터는 시기별로 조사 지역이나 조사 내용 등에서 차이를 지니고 있다. 초기 데이터 수집 시 향후 지속적인 비교를 위해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산 신청자들의 프로파일의 파악하는데 유용한 정도의 공통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 비교·분석하기 위해 사용하는 각 시기별 소비자 파산 프로젝트의 지정학적 범위와 표본 크기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법원 기록 데이터들은 파산 신청 가구들의 경제적 프로파일에 대한 일관된 변수들을 제공한다. 이 데이터들을 통해 소비자 파산 절차에 들어가는 가구들이 얼마만큼의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는지 검

107) 이 부분은 Lawless et al., 앞의 논문 이후 2007년 데이터와 비교한 앞선 프로젝트들의 데이터에 대한 비판 등을 담은 Rafael I. Pardo, *Failing to Answer Whether Bankruptcy Reform Failed: A Critique of the First Report from the 2007 Consumer Bankruptcy Project*, 83 Am. Bankr. L.J. 27 (2009)의 논문에서 지적한 것들에 대하여 원 보고서의 저자들이 Lawless et al., *Interpreting Data: A Reply to Professor Pardo*, 83 Am. Bankr. L.J. 27 (2009) 논문을 통해 재반박한 부분들을 참고로 하여 원 보고서에서 사용된 데이터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시기별 비교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해 밝히고자 연구자가 추가로 구성하여 삽입하였다.

증하는데 기초자료로 작용할 수 있다. 데이터 확보를 위해 사례의 선택기준들을 살펴보면, 1981년부터 2007년까지 모든 파산 신청자가 아닌 제7장과 제13장 신청자들만을 표본 집단에 포함하였다. 그리고 법인이나 조합 채무자를 제외한 개인 채무자에 한정하여 사례에 포함시키는 원칙을 고수하였다.¹⁰⁸⁾ 이러한 공통적인 부분들 외에 각 시기별 조사의 차이 역시 존재하고 있기에 이를 포괄적으로 비교하여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각 연구를 비교하기 위해 크게 몇 가지 범주로 나누고 이에 따라 정리하였다. 연구자들이 2007 소비자파산 프로젝트 보고서¹⁰⁹⁾를 토대로 각 시기별 데이터를 비교하기 위해 정리한 범주는 표본 추출 방법, 표본 지역, 표본 수, 수집방법, 데이터 내용, 기타와 같이 구성하였다. 각 소비자파산 프로젝트를 동일한 범주를 통해 살펴봄으로써 각각의 소비자파산 프로젝트 데이터를 표본의 대표성 등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분석하는 것이 적절한 지 점검하는 한편, 각각의 데이터 세트가 가지고 있는 한계 역시 파악하고자 하였다.

1) 소비자파산 프로젝트 I (1981)¹¹⁰⁾

① 표본 추출 방법(sampling): 기준 등

1981년 전체 파산 신청한 개인 파산 사례들은 ‘체계적 선정(systematic selection of individual cases filed)’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¹¹¹⁾

108) 실제로 소비자 파산사건과 기업 파산사건을 분류하는 완벽한 단일 기준은 존재하지 않지만, 파산 신청에서 채무자의 성명에 개인의 이름으로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기업의 파산 사건으로 보았다. Lawless, 앞의 논문, 387면.

109) Lawless et al., 앞의 논문, 388-398면 참조

110) Teresa A. Sullivan, Elizabeth Warren & Jay Lawrence Westbrook, *Folklore and Facts: A Preliminary Report from The Consumer Bankruptcy Project*, 60 Am. Bankr. L.J. 293 (1986) (1981 CBP data) 참조.

111) 파산 신청자들의 자발적 참여는 아니었다.

② 표본 지역: 숫자 및 지역 단위

3개 주(일리노이, 펜실베니아, 텍사스)의 10개 각 연방 지방법원 관할에서 파산을 신청한 150개 사례를 표본으로 삼았다.

③ 표본 수(사례 수): 전체 사례 수 및 회수된 최종 사례 수

표본으로 삼은 150개 사례는 3개 주 10개 구역들 중 6개 구역에서 파산을 신청한 제7장과 제13장의 비율을 반영한다. 6개 구역 가운데 4개 구역에서 제13장에 파산을 신청한 사례의 비율이 매우 낮아 나머지 4개 구역에서 제13장 사례에 대한 초과 표집이 이루어졌다. 전반적으로 제7장과 제13장에 대한 일정부분 비율 할당이 이루어졌고 표집과정에서 보정이 이루어진 것은 그 할당 비율을 맞추기 위해 타 지역(나머지 4개)에서 초과 표집이 이루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④ 수집 방법(회수 외 기타 방법)

파산 신청서와 스케줄과 사건 일람표(the court docket)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⑤ 데이터 내용: 소득, 자산, 채무

파산신청 시점의 소득(income), 자산(assets), 채무(debts)를 포함한 채무자의 재정적 조건들에 대한 상세한 프로파일들로 구성되었다.

⑥ 기타 추가 사항

파산법원의 기록물들로부터 얻은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파산법원 판사와 변호사들에게 소비자 파산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요청한 인터뷰를 추가로 보충하였다.

2) 소비자파산 프로젝트 II(1991)¹¹²⁾

① 표본 추출 방법(sampling): 기준 등

1991년 상반기에 소비자 파산을 신청하고 수기 설문을 작성했다면 소비자파산 프로젝트 II 표본에 포함시켰다. 표본 지역에서 파산 신청하고 설문을 작성한 자들 가운데 무작위로 추출하였다.

② 표본 지역: 숫자 및 지역 단위

5개 주, 일리노이, 펜실베니아, 텍사스, 캘리포니아, 그리고 테네시의 두 연방지방법원 관할에서 파산을 신청한 사례를 대상으로 삼았다.

③ 표본 수(사례 수): 전체 사례 수 및 회수된 최종 사례 수

5개 주 각각에서 하나의 연방지방법원 관할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150개 사례를 하위표본(subsample)으로 삼았다.

④ 수집 방법(회수 외 기타 방법)

소비자파산 프로젝트 I과 마찬가지로 파산법원의 기록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추가로 신청자들에 설문을 수집하기도 했는데, 파산 신청자 사건에 배정된 파산 관재인과의 만남에서 배부되어 직접 수기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일부는 파산 신청을 할 때 변호사나 채무자에게 배부되어 수기 응답을 받았다. 미완성이거나 일부만 응답한 설문은 최종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⑤ 데이터 내용: 소득, 자산, 채무

파산법원의 기록물들로부터는 파산신청 시점의 소득, 자산, 채무를 포함한 채무자의 재정적 조건들에 대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다. 추

112) Teresa A. Sullivan, Elizabeth Warren & Jay Lawrence Westbrook, *Consumer Debtors Ten Years Later: A Financial Comparison of Consumer Bankrupts 1981-91*, 68 Am. Bankr. L.J. 121 (1994) (1991 CBP data) 참조.

가로 얻은 설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설문은 각 채무자의 연령, 성별, 교육, 직업, 결혼 여부, 교육 배경, 인종, 민족성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데이터에 관한 것이었고, 법원 기록물과 대조를 위해 응답자들의 이름, 사건 번호, 파산 이유를 추가로 기재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영어와 스페인어 모두 가능하게 구성되었고 대부분의 질문은 보기가 주어진 폐쇄형 질문¹¹³⁾으로 이루어졌다.

⑥ 기타 추가 사항

추가 인터뷰는 실시하지 않았다.

3) 소비자파산 프로젝트 III(2001)¹¹⁴⁾

① 표본 추출 방법(sampling): 기준 등

2001년 상반기에 소비자 파산을 신청하고 수기 설문을 작성한 채무자들로 구성하였다. 추가 설문은 대상자 중 자원한 것이고 기밀로 취급하였다.

② 표본 지역: 숫자 및 지역 단위

5개 주, 일리노이, 펜실베니아, 텍사스(북부), 캘리포니아, 테네시의 5개 연방지방법원 관할 내 파산법원에서 파산을 신청한 사례를 대상으로 삼았다.

③ 표본 수(사례 수): 전체 사례 수 및 회수된 최종 사례 수

5개 구역에서 각 250개의 응답 설문이 수집되어 총 1250개의 표본이 분석에 이용되었다. 2002년 1차 전화 인터뷰는 602명(응답률 48.1%)

113) 5지 선다형과 같이 보기를 제시하고 응답자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는 방식을 뜻한다. 이와 반대로 빈 칸을 제시하고 응답자가 자유롭게 적도록 하는 경우는 개방형 설문이라 부른다.

114) Teresa A. Sullivan, Elizabeth Warren & Jay Lawrence Westbrook, *Less Stigma or More Financial Distress: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Extraordinary Increase in Bankruptcy Filings*, 59 Stan L. Rev. 213 (2006) (2001 CBP data).

에게 이루어졌고, 3년 후 2004년 2차 인터뷰는 1차 인터뷰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연락이 닿은 474명(37.9%)에게 실시되었다.

④ 수집 방법(회수 외 기타 방법)

표본 지역의 파산법원의 기록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 코딩하였고, 파산 신청자 가운데 수기설문 작성 후 회수된 것들. 그리고 설문응답자 중 50달러의 보상을 받는 대신 추가 전화 인터뷰에 응하기로 한 응답자들을 통해 전화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⑤ 데이터 내용: 소득, 자산, 채무

파산법원의 기록물로부터 1981년과 1991년에 코딩된 모든 필드들을 포함하여 파산 신청서와 스케줄에 보고된 대로 채무자의 소득, 자산, 채무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었다. 설문지는 인구통계학적 데이터와 파산 원인, 각 채무자들의 의료비, 주택소유, 주택 대출, 고용 여부, 파산 전 상황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었다. 전화 인터뷰는 일반적 내용, 의료 문제, 소기업 소유, 주택 소유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고, 일반적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설문이나 일반적 내용에 관한 인터뷰 중 해당자들에게만 질문하였다.

⑥ 기타 추가 사항

설문 이외에 2002년 1차, 2004년 2차 전화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해당 전화 인터뷰는 컴퓨터 보조 인터뷰 기술을 사용하는 훈련된 조사자 팀에 의해 이루어졌다.

4) 소비자파산 프로젝트 IV(2007)¹¹⁵⁾

① 표본 추출 방법: 기준 등

2007년 2월 첫 주부터 연속 5주간 매주 1천 사례씩 무작위로 표본을 선정하였다. 이들에게 우편으로 설문을 발송하여, 유효하지 않거나

115) Lawless et al., 앞의 논문, 391-398면 참조

반송된 경우 사례를 교체하기 위해 3월 마지막 주, 4월 첫째 주의 파산 신청 건 중 255개의 무작위 표본이 추가되었다. 전화 인터뷰는 설문 응답자 중 참여 의사를 밝힌 이들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2007명).

② 표본 지역: 숫자 및 지역 단위

미국 50개주(괌, 푸에르토리코 등 제외)의 사건들을 사용하였다

③ 표본 수(사례 수): 전체 사례 수 및 회수된 최종 사례 수

5주간 1천 사례씩, 총 5,000개의 표본을 선정하고, 설문사항을 묻는 우편 발송 작업을 통해 255개가 교체되고, 최종 4,976개의 설문지가 발송되었다. 이 가운데 2,521개의 응답이 왔고(50.7%), 이 가운데 응답을 거절한 83명을 제외한 나머지 2438명을 최종 표본으로 분석에 이용하였다. 전화 인터뷰는 참여의사를 밝힌 2007명 가운데 실제 1032명을 통해 이루어졌다(51.4%). 이들의 응답편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④ 수집 방법(회수 외 기타 방법)

법원 기록물은 연방법원 전자시스템인 'PACER'를 통해 수집되었고, 설문은 우편을 통해 회송용 봉투 및 2달러의 감사표시 등을 통해 이루어졌고, 이후에 지속적으로 우편, 전화를 이용하여 설문에 응답하기를 요청하였고, 무료 전화 및 웹사이트를 통해 설문을 마칠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 응답을 얻고자 했다. 전화 인터뷰는 2007년 9월, 2008년 2월 사이에 컴퓨터 보조 전화 인터뷰를 이용하여 평균 1시간 50분 가량 실시되었다.

⑤ 데이터 내용: 소득, 자산, 채무

법원 기록물로부터는 소득, 자산, 채무, 월 지출, 이전 파산 상황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었다. 설문은 인구통계학적인 정보, 주택 소유,

학자금 대출, 고용상태, 그리고 파산 신청 전 재정적으로 어떻게 대처했는지, 어떤 정황으로 인해 파산에 이르게 되었는지 등을 질문하였다. 아울러 개방형 문항으로 스스로 자신의 파산에 대해 어떻게 여기는지 기술하게끔 요청하였다. 전화 인터뷰는 일반적 내용으로 고용, 신용카드, 학자금 대출, 보험, 건강상태, 파산 이전의 빈곤, 파산 이후 재정 상황을 공통적으로 묻고, 이외에 의료, 주택, 소규모 사업, 군복무 등에 대해 질문하였다.

⑥ 기타 추가 사항

확보한 데이터들이 실제 전국의 제7장과 제13장 비율이 약간 차이를 보이고 있기에 약간의 가중치를 두어 전국 인구를 반영하도록 조정하였다.

2. 분석 데이터 정보¹¹⁶⁾

파산신청 채무자들로부터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데이터의 정보는 다음과 같다. 폐쇄형 설문을 통해 인구통계학적 정보, 현재 응답자가 처한 상황을 나타내는 정보, 예컨대, 주택 소유 상황, 학자금 대출 상황, 그리고 현재 고용상태에 관한 상황 등이 그것이다. 또한 추가적으로 개방형 설문을 통해 응답자들이 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재정적으로 어떻게 대처했는지, 어떤 정황들로 인해 파산하게 되었는지 기술하도록 하여 세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응답자들로부터 얻은 데이터를 토대로 수집한 법원 기록들은 모든 사례들의 소송사건 일람표(docket sheet), 청원서(petition), 재정명세표(financial schedules), 재무 진술서(Statement of Financial Affairs: 양식 7), 의향 진술서(Statement of Intention: 양식 8) 등이다. 이밖에 자동중지 또는 사건의 기각으로부터의 구제를 구하는 신청이나 이들 신청을 각하

116) Lawless et al., 앞의 논문, 391-397면 참조

하는 법원의 명령들도 포함하였다. 또한, 재확인 약정(reaffirmation agreements) 및 제13장 절차에서 확정된 변제계획과 같은 추가문서들도 법원 기록들을 통해 수집되었다. 수집된 데이터들은 각각 특별히 설계된 데이터베이스로 코딩되어 분석에 활용되었다. 마지막으로 전화 인터뷰를 통해 얻은 데이터들의 정보는 크게 5개 범주로 나뉜다. 고용, 신용카드, 학자금 대출, 보험, 채무 등의 일반 내용들, 의료, 주택, 소규모 사업, 그리고 군복무와 같은 내용들이 그것이다. 전화 인터뷰의 내용은 설문 데이터와 대조하여 오차를 제거하도록 보정하였다.

3. 분석 방법

2005년 개정 연방파산법의 목적은 파산절차를 남용하는 변제자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채무자들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파산신청자의 수를 줄이는 것보다는 파산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였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향후 채무를 갚아나갈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산시스템을 악용하는 채무자들을 걸러내기 위해 파산절차를 통한 구제의 자격을 제한하는 변제자력조사(means test)를 실시하였으며 해당 조사의 핵심은 소득조사였다.

2005년 개정 연방파산법 이후, 파산 신청자들이 급감한 사실이 과연 변제자력조사에 의한 파산 시스템을 악용하는 채무자들을 걸러낸 것인가에 대해 데이터에 기반하여 검증해 보고자 다양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소득조사를 위해 수집한 2007년 소비자파산 프로젝트 IV 데이터를 2001년 소비자파산 프로젝트 III 데이터와 비교하여 두 시기 사이의 파산 신청자들의 여러 가지 특성이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통계적으로 검정하였다. 시기별로(2005년 이전과 이후) 차이가 나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한 통계적인 검정은 윌콕슨 순위합 검정(Wilcoxon rank-

sum test)¹¹⁷⁾을 주로 이용하였고, 해당 데이터 성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병행하였다.

분석은 크게 2가지 부분으로 나뉜다. 첫 번째로, 2005년 이전과 이후 파산 신청자들의 소득 차이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통해 고소득 채무자를 배제하는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파산 신청자들의 연 평균 소득 데이터, 그리고 연 평균 소득 1만 달러 단위로 구분하여 구간 별 차이를 검증하고자 했다. 또한 제7장 절차를 신청하고자 했던 채무자들을 제13장 절차로 전환하는 것 역시 효과를 발휘했는지 살펴보기 위해, 2005년 이전과 이후 제7장과 제13장 신청 비율 변화, 그리고 각각의 신청자들의 평균 소득을 비교함으로써 실제 피상적 데이터의 단순 비교에 그치지 않고 실제 데이터가 나타내는 함의를 논리적으로 풀어 설명하고자 했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각각의 소득 데이터는 파산 신청자들의 평균 소득을 이용한 것이다. 소득의 경우 분포의 대표적인 값으로 사용하는 중심경향값¹¹⁸⁾ 가운데 중앙값(median)을 이용하였다. 그 이유는 평균은 극단값이 있을

117) 윌콕슨 순위합 검정 방법은 비모수통계기법의 하나로서 서로 다른 표본의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검정방법 중 하나이다. 관측치 자체를 사용하지 않고 측정값의 순위를 이용하여 통계적으로 검정하는 방법이다. 비모수 통계는 모집단의 분포가 정상분포를 따르지 않거나 동일 변량이 아닐 경우에도 추정이 가능한 방법이다. 관측치의 표본수가 많지 않거나 두 표본이 정규분포의 형태를 띠지 않았을 경우라도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118) 모집단이나 표본으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들을 살펴보면 특정한 값으로 모이는 경향을 나타내는데, 이를 중심경향값이라 한다. 중심경향값은 평균, 중앙값, 최빈값의 세 가지 종류로 나뉜다. 평균(mean)은 전체 사례 수의 값을 더한 다음에 총 사례 수로 나눈 값을 말한다. 중앙값(median)은 자료들을 가장 작은 값부터 가장 큰 값까지 순서대로 나열하였을 때, 가운데 위치하는 값을 의미한다. 한 분포에 포함되어 있는 전체 사례수를 둘로 나눈 점에 해당하는 값이다. 중앙값은 모든 자료에서 이용할 수 있지만, 특히 서열을 매길 수 있는 자료에 가장 적합하며 극단값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특징을 지니며, 기호는 (mdn)으로 표기한다. 최빈값(mode)은 자료에서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이는 값으로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러 개의 값이 존재할 수도 있다. 다른 관측값의 분포나 사례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계산된다는 특징이 있으나 평균이나 중앙값의 보조로 사용된다.

경우 전반적인 중심경향값의 왜곡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소득과 같이 극단값이 존재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¹¹⁹⁾

두 번째로, 2005년 이후 파산 신청자들의 자산과 채무 등 전반적인 대차대조표를 살펴봄으로써, 소득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변제자력조사에서 놓치고 있는 채무자들의 재정상황까지 파악하고자 했다. 시기별로 채무자들의 총자산과 총채무를 비교함으로써, 이들의 순자산 상황과 더불어 재정적 고통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파악하고자 했다.

또한, 주택이 가장 큰 자산인 일반 시민들의 경우에 비추어, 파산 신청 채무자들에게도 소유 주택의 가치와 주택을 담보로 한 채무 정도의 변화를 미국 전체 평균과 함께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했다. 이는 일반 시민들에 비해 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들의 재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이다. 이밖에 자동차와 같은 비주택 담보채무도 함께 살펴보았다. 또한, 담보채무는 해당 채무를 즉시 상환해야 하기보다 장기간에 걸쳐 상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실제 채무자들의 현재 재정에 미치는 고통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덜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신용카드나 공공요금 등의 무담보채무의 경우,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이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거나 수수료가 증가하여 채무자의 부담을 급속도로 증가시킬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파산을 신청한 채무자들에게는 이러한 무담보채무가 현재 가장 고통을 주는 요인일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무담보채무 상태와 시기별 변화율을 살펴보았다. 시기별 변화율을 통해 채무자들이 직면한 고통의 정도 변화를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

119) 10명 중 소득 1억 원인 1명 그리고 9999명의 소득은 1만원이라고 할 때, 1명을 제외한 9999명의 소득 평균은 10,000이다. 그러나 1억 원의 소득을 올리는 1명이 포함됨으로 인하여 전체 1만 명의 소득 평균은 199,990원이 된다. 실제 대부분 사람들의 소득인 1만원에 비해 무려 20배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이처럼 극단값이 있을 경우 평균은 실제 중심경향값을 나타내는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외에 변제자력조사와 함께 생각해볼 수 있는 내용으로서, 소득 대비 총 채무, 그리고 소득 대비 무담보채무 비율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향후 채무를 갚아나갈 여력에 대해 전반적으로 파악하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2005년 개정 연방파산법 시행 이후, 줄어든 파산 신청자들이 시스템을 남용하는 고소득 채무자들이 걸러져 사라진 것이 아니라, 파산 신청을 포기한, 파산 신청자들과 다른 채정 상태에 있는 이들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했다. 그 방법으로 시스템에 의해 구제받지 못하고 고통의 정도는 더 커지고, 보다 오랜 기간 고통받게 되는 선택을 한 ‘사라진 80만’에 대한 논리적 추론을 위해 파산 신청자들이 얼마나 장기간 채무와 어려움을 겪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살펴보았다.

3

2007 소비자 파산 프로젝트와 이전의 데이터들을 이용하여 몇 가지를 비교·분석하였다. 2005년 연방파산법 개정 이후 파산 남용자들을 걸러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시기별로 파산 신청가구들의 평균(mdn)¹²⁰ 소득을 비교하였다. 이와 더불어 남용자들을 제7장에서 제13장으로 전환하고자 한 목표가 달성되었는지에 대한 검증을 위해 제7장과 제13장 파산 신청 가구들의 평균(mdn)소득을 비교하였다. 이외에 개정 이후 파산 신청가구들의 자산과 채무에 대해 다각도로 살펴봄으로써 그들이 실제 겪고 있는 재정적 고통 정도를 파악하고자 했다.

120) 실제 소득 데이터라는 특성에 따라 시기별 혹은 장 별 가구들의 비교에서 사용된 값은 중앙값(mdn)임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는 중심경향값 즉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평균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기에 일반적인 독자들을 위하여 평균으로 표기하되, 중앙값의 기호(mdn)을 추가하였다. 그러나 Lawless 교수의 원 보고서에서 ‘average’로 표현된 값들의 경우 평균이라 표기하고 (average)를 추가하였다.

1. 시기별 파산신청 가구의 평균(mdn) 소득비교¹²¹⁾

2005년 개정 연방파산법이 채무 변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7장 파산을 신청한 개인들을 제외하거나 혹은 제13장으로 전환하도록 하여, 실제 재정적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파산 구제의 남용자들을 걸러내고자 하는 개정 목표를 달성했다면 2007년 파산을 신청한 가구들의 소득수준이 낮아졌어야 하나, <그림 1> 에서 보듯 실체는 그러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2005년 개정 연방파산법은 고소득 채무자들이 제7장 신청을 막거나 제13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소득에 기반한 변제자력조사(means test)를 활용하였다. 변제자력조사가 효과를 나타냈다면, 개정법이 발효된 2005년 이후 파산 신청자들의 양상이 달라짐을 기대할 수 있다. 제7장 절차를 신청한 고소득 채무자들이 줄어들어 따라 제7장 파산 신청자들의 평균(mdn) 소득은 2005년 이전에 비해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낼 것이다. 한편으로, 이전에 제7장으로 신청했을 사람들이 변제자력조사에 의해 걸려져 제13장으로 전환 신청함에 따라 제13장 파산 신청자들의 평균(mdn) 소득은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제7장이나 제13장 모두에 적용받지 못하는 고소득 채무자들은 파산 신청에서 걸러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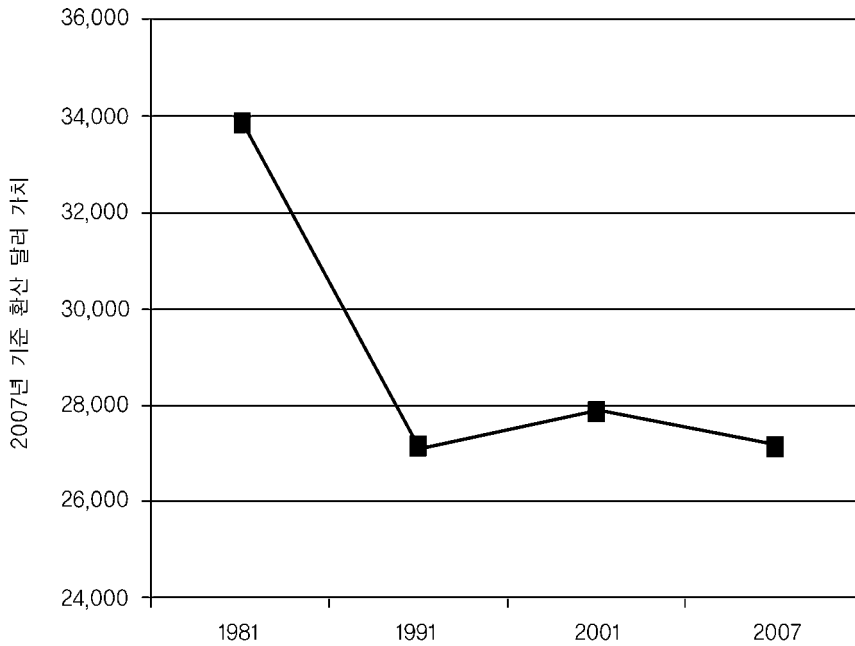
이러한 예상을 종합하면 2005년 이후의 파산 신청자들의 소득 프로파일은 이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 2007년 파산 신청자들의 데이터를 살펴보면 2005년 개정 연방파산법 이전인 1991년과 2001년의 파산 신청자들의 평균(mdn) 소득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714달러 차이). 그러나 이와 같은 차이가 실제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인지는 알 수 없었다.

따라서, 실제 파산 신청자들의 평균(mdn) 소득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실제 시기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라고 할 수 있을지 월

121) Lawless et al., 앞의 논문, 356-363면의 내용을 요약 재구성하였다.

복순 순위 합 검정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2005년 개정 연방파산법이 발효되기 전인 2001년 소비자파산 프로젝트 III와 이후 2007년 소비자파산 프로젝트 IV의 파산 신청자들의 평균(mdn) 소득 분포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 < .86$).¹²²⁾

그림 1 시기별 파산신청자들의 평균(median) 가구 소득



출처: Lawless et al., 앞의 논문, 359면.

2. 가구 수입 수준별 구성 비율 변화¹²³⁾

이러한 양상을 더욱 확실히 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파산 신청자들의 소득에 따라 몇 개로 구분하여 2005년 이전과 이후의 소득 분포를 비

122) 이전 시기들과 비교하여 봐도 1991년 vs. 2007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p < .92$). 일반적으로 p-value가 .05보다 작을 때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판정한다. 그러나 .05라는 유의수준은 절대적이지 않다. 연구 분야에 따라, 연구자의 초기 설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기도 한다.

123) Lawless et al., 앞의 논문, 356-363면의 내용을 요약 재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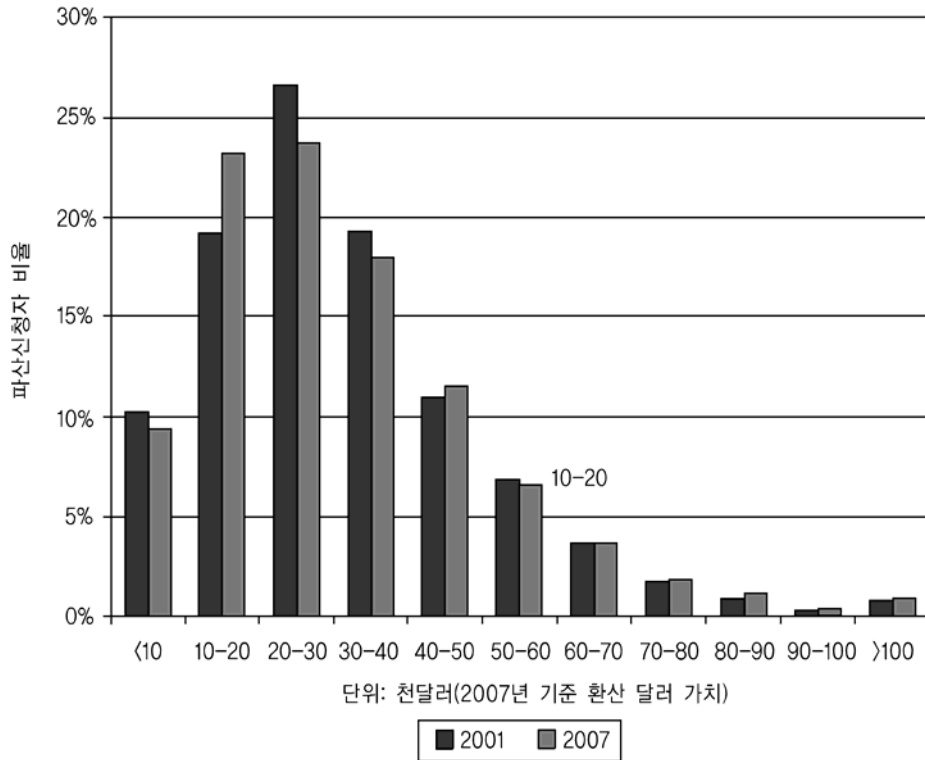
교하였다. 연 평균(mdn) 소득 1만 달러 이하부터 1만 달러 단위로 구분하여 연 평균(mdn) 소득 10만 달러 이상까지 11개 구간으로 나누어 2001년 소비자파산 프로젝트와 2007년 소비자파산 프로젝트 데이터들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그림 2> 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의 소득 구간에서 2001년과 2007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 연 평균(mdn) 소득이 1만-2만 달러 구간에서 2007년 파산 신청자들이 다소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2만-3만 달러 구간에서는 그 비율이 다소 낮게 나타났다.

이 두 구간에서 2005년 개정 연방파산법 이전과 이후의 변화는 변제자력조사를 통해 변제자력이 있다고 판정하는 고소득 채무자들의 소득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므로 2005년 개정 연방파산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관심의 영역이 아니었다. 파산을 남용하는 고소득 채무자들을 걸러내고자 했던 입법목적과 보다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최상위 구간(연 평균(mdn) 소득 10만 달러 이상)에서는 2005년 개정 연방파산법 발효 전과 비교할 때 별반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소득 채무자들이 2005년 개정 연방파산법 이후에도 거의 같은 비율로 파산 절차를 신청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파산 신청자들의 전체 평균 소득 분포, 그리고 소득 구간별 소득 분포 비교를 통해 2005년 개정 연방파산법 이전과 이후에 소득 분포 변화는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 파산법 개정 전과 비교하여 파산 신청자들의 소득 수준이 별반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 이후 전체 파산 신청자들의 수가 줄었다는 사실은 모든 계층에서 파산 신청자들의 수가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결과들을 고려할 때, 파산을 남용하는 자들을 걸러내기 위한 기준으로 소득을 이용한 변제자력조사의 실효성에 대해, 그리고 변제자력이 있는 고소득 채무자들을 파산절차 제7장 밖으로, 그리고 제13장으로의 전환으로 이끌고자 했던 2005년 개정 연방

파산법의 초기 입법 목적 달성이 실패했다고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 파산신청자들의 가구 소득 수준별 변화 비교



출처: Lawless et al., 앞의 논문, 360면.

3. 제7장, 제13장 파산신청 가구들의 평균(mdn) 소득비교¹²⁴⁾

2005년 개정 연방파산법의 입법 목적은 변제자력조사를 통해 지불 능력이 있는 고소득 채무자들을 파산 시스템에서 제외시키는 한편 제

¹²⁴⁾ Lawless et al., 앞의 논문, 356-363면의 내용을 요약 재구성하였다.

7장 절차에서 제13장 절차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목적도 있다. 2007년 소비자파산 프로젝트에서는 변제자력이 있는 고소득 채무자들을 파산 절차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실패했다고 판단되는 것 이외에 이들을 제 7장에서 제13장으로의 전환시키고자 한 것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살펴보았다.

2005년 개정 전 2004년 데이터¹²⁵⁾에서 개인 파산에서 제13장 사건은 전체의 29%였으나, 2007년 데이터¹²⁶⁾에서 41%로 증가하였다.¹²⁷⁾ 제 13장 절차의 신청자가 증가하였다는 사실만을 놓고 볼 때, 2005년 개정 연방파산법의 입법 목적 중 일부(제7장에서 제13장으로의 전환)는 달성한 것이라 판단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프로젝트에서는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기 위해 데이터들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았다.

애초에 2005년 개정 연방파산법은 파산절차를 남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변제능력이 있는 고소득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제7장 파산 절차에서 제외시키거나, 제7장 신청자들을 제13장으로 전환 유도하고자 했다는 점이다.

위 데이터에서 2005년 개정 연방파산법 발효 이후 제7장과 제13장 파산 신청자들의 비율이 변화되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환 신청한 파산 신청자들이 과연 파산법 개정 당시 목표로 했던 시스템을 남용하는 ‘변제능력이 있는 고소득 채무자들’인지에 대해 명확히 확인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실제 변제자력조사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배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어 지불능력이 있는 고소득 채무자들을 제7장 절차에서 제13장 절차로 전환하도록 하였는지 데이터를 통해서 살펴보았다. 실제 그러한 목적에 맞게 작동하였다면, 2005년 개정 연방파산법이 발

125) Administrative Office of the U.S. Courts.

126) 소비자파산 프로젝트 IV 데이터

127) 2004년 제7장 : 제13장 = 71% : 29%, 2007년 제7장 : 제13장 = 59% : 41%

효된 이후 제7장 절차를 밟고자 하는 파산 신청자들의 평균(mdn) 소득은 발효 이전에 비해 더 낮아지고, 제13장 절차를 밟고자 하는 파산 신청자들의 평균(mdn) 소득은 더 높아지는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표 1 제7장과 제13장 파산 신청자들의 연 평균(mdn) 소득 비교

년도	평균(mdn) 소득	2001 소비자파산 프로젝트	2007 소비자파산 프로젝트
제7장 파산신청자		23,716	23,136
제13장 파산신청자		33,742	35,688

출처: Lawless et al., 앞의 논문, 361면을 참고하여 표로 재구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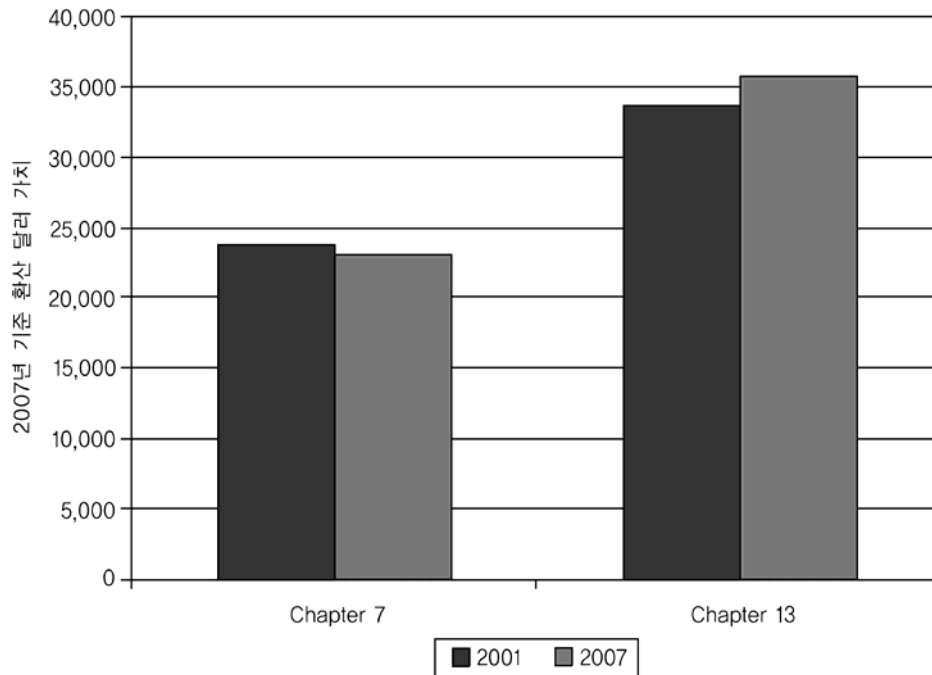
그러나 2001년과 2007년의 소비자파산 프로젝트 데이터들을 통해 비교하여 보면 두 기간 사이의 제7장과 제13장 파산 신청자들의 연 평균(mdn) 소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¹²⁸⁾

소득에 근거하여 ‘고소득’ 채무자들을 대거 제13장으로 전환시키고자 했던 변제자력조사의 취지와 달리, 무작위적이고 임의적으로 제7장 절차를 밟고자 했던 채무자들을 제13장으로 전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꾸어 말하면 고소득 채무자만을 제13장으로 전환하기보다는 제13장으로 전환될 여력이 없는(즉, 제7장 구제가 절실히 필요한) 채무자들 역시 제13장으로 전환 신청하게 되는 경우도 나타나 이들의 부담을 덜어 주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¹²⁹⁾

128) 제7장. Wilcoxon $Z=1.718$, $p=.086$ (n.s). 제13장. Wilcoxon $Z=.894$, $p=.371$ (n.s.) not significant

129) 2005년 개정 연방파산법이 모든 채무자에게 파산 절차를 신청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제13장으로 전환시키고자 한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시민들이 더 이상 채무를 감당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여러 불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산이라는 법적 절차를 통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고자 하는 것이 파산법의 입법 취지이기 때문이다.

그림 3 파산 신청 장별 평균(mdn) 가구 소득 변화 비교



출처: Lawless et al., 앞의 논문, 362면.

파산 신청자들의 데이터들을 통해서 2005년 개정 연방파산법의 입법 목적 달성을 살펴보았다. 어떠한 경우에도 2005년 개정 연방파산법 이전과 비교하여 파산 신청자들의 소득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으로 파산을 신청하는 가구들의 소득 수준 자체가 일반 시민들의 평균 소득 수준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다시 말해, 파산을 신청하는 가구들은 이전이나 최근이나 매우 낮은 수준의 소득을 얻고, 앞으로도 그 상황은 그다지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5년 개정 이후 갑작스럽게 발생한 파산 신청의 감소가 소득 기반의 변제자력조사 때문이 아니었음이 데이터를 통

해 잘 드러나고 있다. 파산 시스템에서 변제자력이 있는 고소득 채무자들을 파산 시스템 밖으로 몰아냈다고 주장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한편, 이들을 소득 스크리닝을 통해 제7장 파산 절차에서 제13장 절차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것 역시 성공적이었다고 할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프로젝트에서는 2005년 개정 연방파산법 초기 내세웠던 소득에 기반한 변제자력조사는 실패를 드러내고 있다고 결론짓고 있다.

4. 시기별 파산신청 가구의 평균(mdn) 총자산과 총채무¹³⁰⁾¹³¹⁾

2005년 개정 연방파산법 이전에 비해 파산 신청자들의 평균(mdn) 총 자산은 대폭 증가하였다.¹³²⁾ 이러한 경향은 1991년 시작된 장기 발전에 따라 1991년 19,300달러, 2001년 42,600달러, 2007년 53,100달러로 계속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총자산과 더불어 총채무를 함께 살펴보면 파산 신청자들의 자산 관련 현황을 좀 더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총 채무의 추이를 데이터를 통해 살펴본 결과 자산 변화와 매우 유사한 패턴을 지니고 있었다. 1991년부터 파산 신청자들의 채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81년 47,400달러에서 2007년 87,300달러까지 거의 2배에 달할 정도로 증가하였다. <그림 4>에서 나타난 것처럼 총자산이 증가하면 총채무 역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는데, 1991년에 비해 2007년의 파산 구제 신청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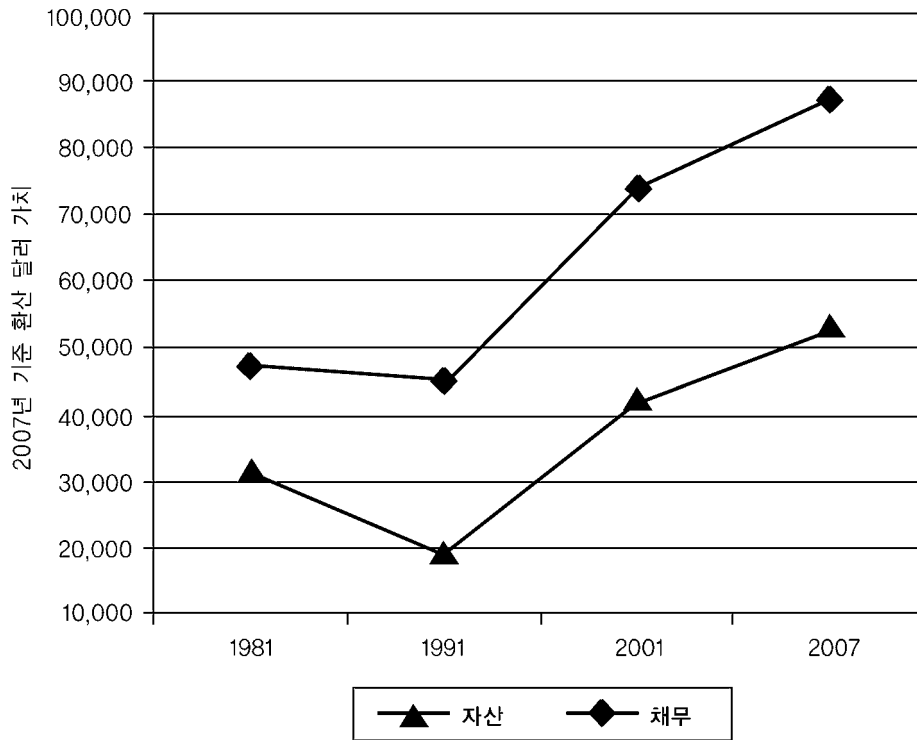
130) 2005년 개정된 파산법은 소득 기반의 변제자력조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실제 파산 신청자들의 자산에 대해서는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파산 시스템의 남용을 설명하기 위해 실제 파산 신청자들의 채무를 제외한 순자산이나 소득 대비 채무비율을 통해 측정된 지불능력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함에도 파산 관련 논의에서 논외로 다루어졌다. 법적 무관심에도 불구하고 파산 신청자들의 재정적 상황에 대한 완벽한 분석을 위해 몇 가지 재정 조건들을 데이터를 통해 살펴 보았다. 총 자산, 총 채무, 담보채무, 무담보채무 등이 그것이다.

131) Lawless et al., 앞의 논문, 364-365면의 내용을 요약 재구성하였다.

132) 2001년 파산 신청자들에 비해 2007년 파산 신청자들의 평균(mdn) 총 자산 규모가 약 25%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 총자산과 총채무가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4 파산 신청자들의 평균(mdn) 총자산과 총채무 변화 비교



출처: Lawless et al., 앞의 논문, 366면.

5. 시기별 파산신청 가구의 평균(mdn) 순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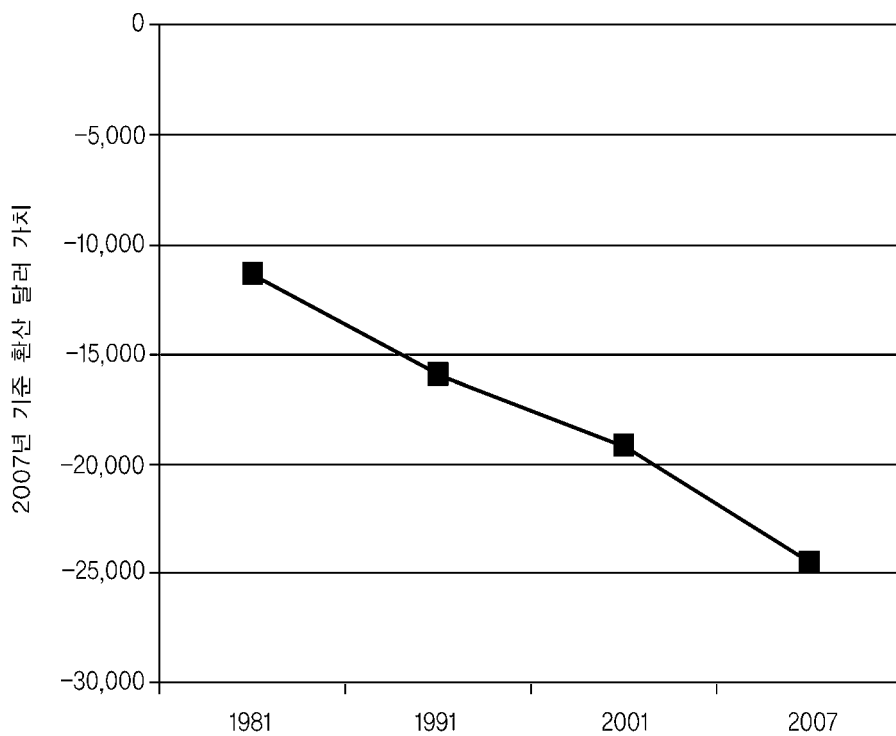
파산 신청자들의 자산과 채무에 따른 대차대조표는 시기별 재정 상태를 보여준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파산 신청자들의 자산과 채무는 모두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자산 증가율에 비해 채무 증가율이 훨씬 더 높다. 소비자파산 프로젝트 I이 실시된 1981년 파산 신청자들의 평균(mdn) 마이너스 순자산¹³³⁾은 11,200달러였는데 반해,

133) 순자산은 총자산에서 총채무를 뺀 나머지를 뜻한다. 마이너스 순자산이라는 것은 총자산보다 총채무의 크기가 더 크다는 것이다.

소비자파산 프로젝트 IV가 실시된 2007년 파산 신청자들의 평균(mdn) 마이너스 순자산은 24,400달러에 이르고 있다. 지속적으로 자산이 증가하지만, 채무가 더욱 빠르게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채무자들의 마이너스 순 자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81년에 비해 2007년에 파산을 신청한 채무자들의 채무는 두 배 이상이 되었다.¹³⁴⁾

자산이 늘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채무가 더욱 늘어남에 따라 채무자들은 점차 가난해지고 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그림 5 파산 신청자들의 평균(mdn) 순자산 변화 비교



출처: Lawless et al., 앞의 논문, 371면.

134) 각 기간의 데이터들은 2007년 달러를 기준으로 환산되어 계산에 이용되었고, 각각의 평균(mdn) 값들은 윌콕슨 순위합 검정을 통해 모든 연도 사이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6. 시기별 파산신청 가구의 평균(mdn) 담보채무¹³⁵⁾

대부분 중산층 가구와 같이 파산 신청구들에게도 주택이 가장 큰 자산이다. 따라서 파산 신청자들의 자산과 채무와 관련하여 주택 및 주택 담보대출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데이터는 파산 신청자들의 자산 가치 상승에 주택 가치 상승이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보여준다.

아래의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01년 파산 신청자들의 평균(mdn) 주택 가치는 103,700달러였는데 반해 2007년 파산 신청자들의 그것은 110,400달러로 이 둘 사이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¹³⁶⁾ 국가 전반적인 상황과 비교하기 위해 미국의 평균(average) 주택 가치¹³⁷⁾와 담보채무¹³⁸⁾를 함께 제시하였다.

그 결과 모든 사람들에게 주택 가치와 담보채무가 함께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냈으나, 파산 신청자들에게는 주택 가치의 상승률에 비해 담보채무의 상승률이 거의 두 배에 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파산 신청자들의 자산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의 가치는 국가 전체의 주택 가치 상승과 함께 증가하였으나, 담보채무는 두 배 가까이 가파르게 증가하여 채무 부담이 이전에 비해 배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표 2 평균(mdn) 주택가치와 담보채무 비교

년도	주택가치/채무	주요 지표		
		2001	2007	상승률
파산 신청자	평균(mdn) 주택 가치	103,700	110,400	6.5%
	평균(mdn) 담보채무	91,600	102,000	11.4%

135) Lawless et al., 앞의 논문, 365-367면의 내용을 요약 재구성하였다.

136) Wilcoxon Z=-1.314, p=.189 (n.s.).

137) 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 Median Sales Price of Existing Single-Family Homes for Metropolitan Areas(2007 Data); Real Estate ABC, USA Real Estate Median Sales Price of Existing Homes since 1968 (2001 Data).

138) U.S. Census Bureau, American Housing Survey.

년도	주택가치/채무		2001	2007	상승률
국가	평균(average)주택 가치		171,700	217,900	27%
전반	평균(average)담보채무		82,600	100,900*	22%

* 2005년 데이터(2007년 기준으로 환산하여 제시함)

출처: Lawless et al., 앞의 논문, 365-366면을 참고하여 표로 재구성함

파산 신청자들은 일반적인 가구들과 마찬가지로 주택 외에 자동차 대출과 같은 담보채무를 가지고 있다.¹³⁹⁾ <표 3> 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비주택 담보채무의 정도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주택 담보채무에 비해 그 절대 가치는 크지 않지만, 2001년에 비해 2007년 28% 증가하였다.¹⁴⁰⁾ 같은 기간 이들의 비주택 자산 가치(이 역시 절대 가치는 크지 않다) 상승률은 18%에 지나지 않았다.¹⁴¹⁾ 월복순 순위합 검정을 통해 두 기간 사이의 자산 및 채무 변화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임을 확인하였다.

표 3 평균(mdn) 비주택 자산가치와 담보채무 비교

년도	비주택자산/채무		2001	2007	상승률
	평균(mdn) 비주택 자산 가치		11,200	13,200	18%
	평균(mdn) 비주택 담보채무		36,000	46,000	28%

출처: Lawless et al., 앞의 논문, 367면을 참고하여 표로 재구성함

139) 파산 신청자들의 절반 가량은 주택 소유자가 아니다. 파산 신청자 가운데 2001년 54.1%, 2007년 51.6%만이 주택을 소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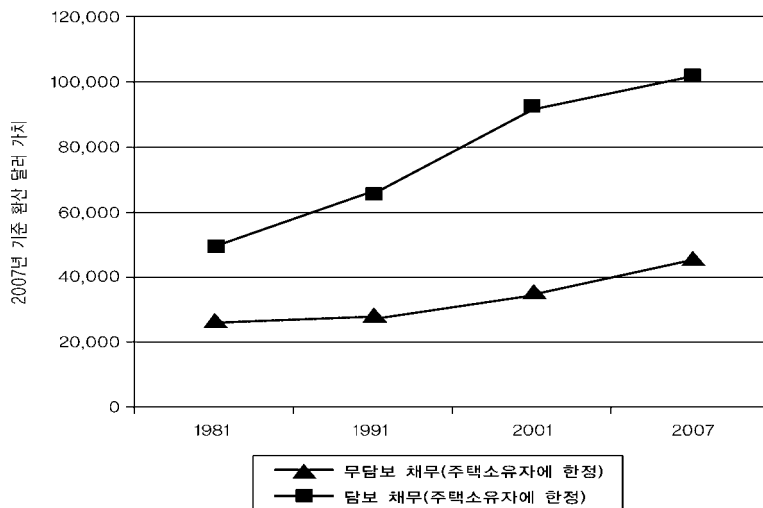
140) Wilcoxon $Z=-7.9629$, $p < .0001$ 으로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141) Wilcoxon $Z=2.21$, $p=.027$ 으로서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임.

다시 말해 파산 신청자들은 약 절반 정도만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거의 없다. 자동차, 가구, 노후 연금 등을 모두 포함한 비주택 자산의 가치의 상승률보다 더욱 빠르게 비주택 자산에 채무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파산 신청자들의 주택 및 비주택 자산 가치는 2001년에 비해 2007년 증가하였지만, 주택 및 비주택 담보채무는 같은 기간 더 높은 비율로 증가하였다. 2005년 개정 연방파산법이 발효된 2005년 이후 파산 신청자들은 이전 파산 신청자들의 채무 부담보다 훨씬 더 커다란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6> 에 파산 신청자들의 주택 및 비주택 담보채무의 변화를 비교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그림 6 파산 신청자들의 평균(mdn) 담보채무 변화 비교



출처: Lawless et al., 앞의 논문, 368면.

7. 시기별 파산신청 가구의 평균(mdn) 무담보채무¹⁴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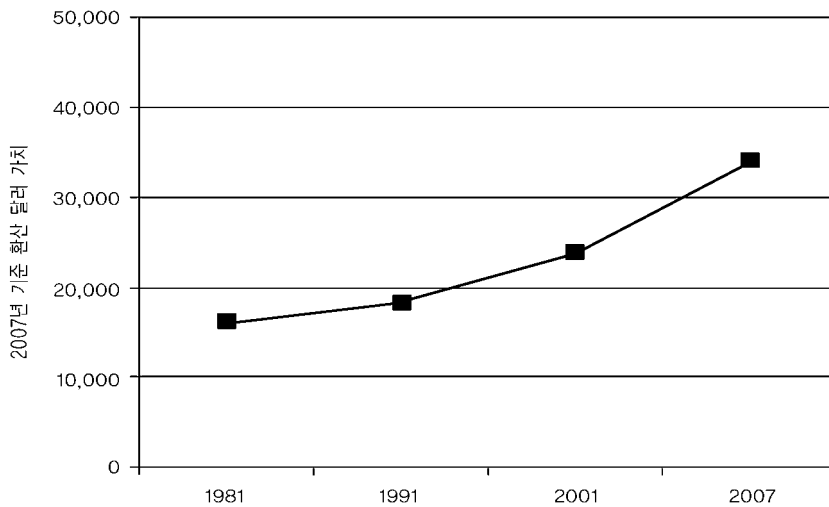
앞에서 살펴본 파산 신청자들의 담보(주택 및 비주택) 채무와 별개로 이들은 신용카드, 수도, 전기, 가스 등의 공공요금, 그리고 여타 무

¹⁴²⁾ Lawless et al., 앞의 논문, 367-369면의 내용을 요약 재구성하였다.

담보채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정 상황을 보다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무담보채무는 공공요금의 경우 즉시 납부해야 하고, 신용카드 비용의 경우 연체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부담은 급속도로 늘어나게 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먼저 소비자파산 프로젝트 데이터에 근거하여 각 시기별 파산 신청자들의 무담보채무 현황을 살펴보았다. 2001년에서 2007년 사이의 무담보채무의 상승률은 앞에서 살펴본 담보채무 성장률에 비해 두 배 이상 높다.¹⁴³⁾

2007년 파산 신청자들은 2001년에 비해 담보채무는 20.8%, 무담보채무는 43.6% 정도의 부담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1981년, 1991년 데이터와 함께 살펴보면 파산 신청자들의 채무 부담은 점차 그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와 같은 경향을 토대로 향후 파산 신청자들의 재정 상황은 더욱 빠르게 악화될 것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그림 7 파산 신청자들의 평균(mdn) 무담보채무 변화 비교



출처: Lawless et al., 앞의 논문, 369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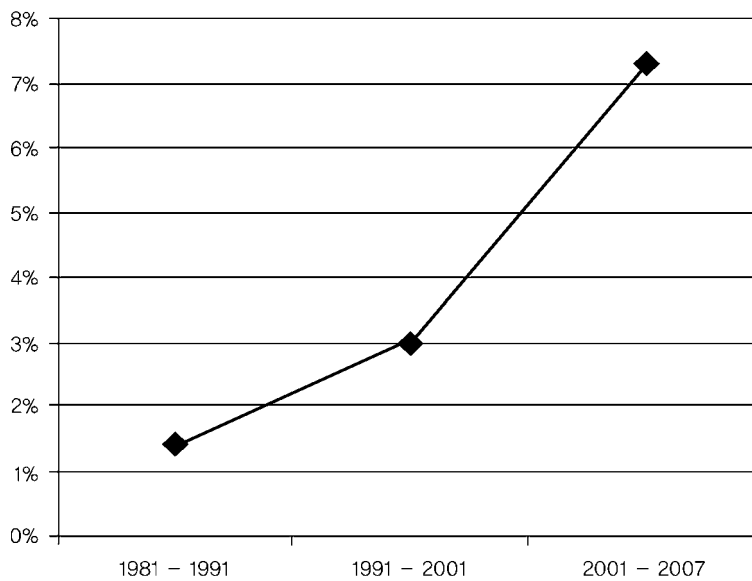
143) 총 담보채무는 비복리로 연평균 3.5%로 증가했으나, 무담보채무는 같은 기간 매년 약 7.3% 증가했다.

8. 시기별 파산신청 가구의 평균(mdn) 무담보채무의 평균(average) 연간변화율 비교¹⁴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구들이 점차 가난해지는(무담보채무의 증가율) 것이 가속화되는 것을 <그림 8> 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1981년에서 1991년 사이의 무담보채무 변화율은 1.4%였으나 1991년에서 2001년 사이의 변화율은 3%로 그리고 2001년에서 2007년 사이의 변화율은 무려 7.3%로 그 기울기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파산 신청자들의 무담보채무 부담의 수준이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무담보채무 변화율의 가파른 증가는 2005년 파산법 개정 당시 파악하지 못했던 문제 요인들이 해소되지 못하고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8 파산 신청자들의 평균(mdn) 무담보채무의 평균 연간변화율 비교



출처: Lawless et al., 앞의 논문, 370면.

144) Lawless et al., 앞의 논문, 368-369면의 내용을 요약 재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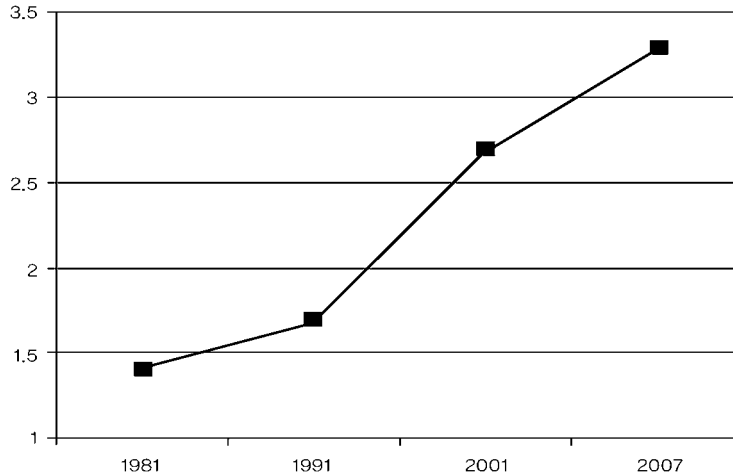
9. 시기별 파산신청 가구의 총 소득 대비 채무비율¹⁴⁵⁾

지금까지 파산 신청자들의 자산과 채무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자산과 채무는 이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그림일 뿐, 현재 이들이 어느 정도의 소득을 올려 직면한 채무 부담을 줄여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답하기 어렵다.

따라서 수집한 데이터들을 토대로, 채무자들의 변동 없는 소득과 높아지는 채무부담 상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각 파산 신청자들의 채무와 소득을 비교분석하고자 하였다.

파산 신청자들의 총 소득 대비 채무 비율을 살펴본 결과 2005년 신청자들보다 더욱 커다란 소득 대비 채무 부담을 지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9>에 나타난 바에 따르면, 1981년에는 총 소득 대비 채무비율이 1.4였으나, 2007년에는 3.3으로 나타나 이전 세대에 비해 두 배 이상의 재정적 곤란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007년 파산 신청자들은 약 1년 5개월 정도의 소득을 빚지고 있다.

그림 9 파산 신청자들의 총 소득 대비 채무비율 변화 비교



출처: Lawless et al., 앞의 논문, 372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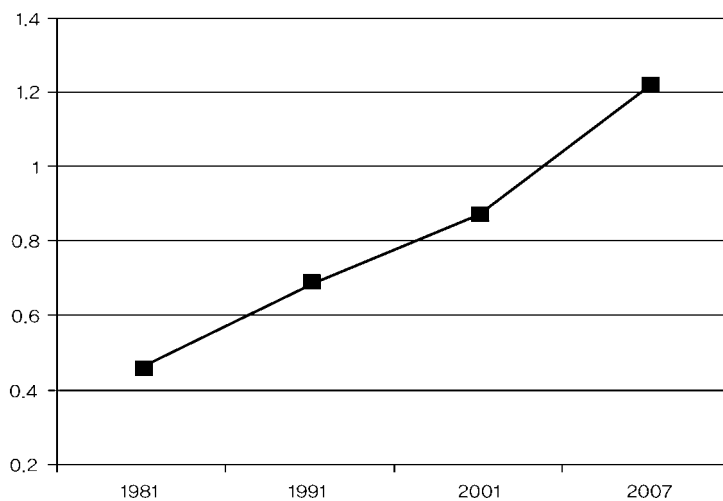
145) Lawless et al., 앞의 논문, 371-372면의 내용을 요약 재구성하였다.

10. 시기별 파산신청 가구의 무담보 소득 대비 채무비율¹⁴⁶⁾

총 채무 가운데 담보채무나 자동차 대출 등은 즉시 상환해야 하는 채무는 아니다. 따라서 이들을 제외하고 즉시 처리해야 하는 소득 대비 무담보채무 비율을 살펴보았다. 이 비율을 살펴봄으로써 파산 신청가구들이 직면한 급박한 위기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연체되면 이자율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수수료의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신용카드나 즉시 갚아야 하는 의료 채무, 이밖에 다른 무담보 용자 등이 파산 신청자들의 현재 재정을 압박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총 소득 대비 채무 비율과 비교하면 <그림 10>에서 볼 수 있듯이, 소득 대비 무담보채무 비율은 1981년 0.46에서 2007년에는 1.22로 1981년에 비해 약 2.7배 증가하였다. 2007년 파산 신청자들은 약 15개월 정도의 소득을 무담보채무 부문에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0 파산 신청자들의 소득 대비 무담보채무 비율 변화 비교



출처: Lawless et al., 앞의 논문, 373면.

146) Lawless et al., 앞의 논문, 372-373면의 내용을 요약 재구성하였다.

2005년 개정 연방파산법 이후 파산 신청자들은 이전에 비해 평균 순자산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2005년 개정 연방파산법 이전 파산 신청자들과 비교하여 볼 때, 소득 수준은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순자산이나 채무 부담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과연 2005년 개정 연방파산법 발효 이후 더 이상 파산 시스템에 의지하지 않는 이들이 무담보채무를 감당할 능력이 있는, 그리고 지불 가능한 채무자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데이터들에 근거한 결과만 놓고 보더라도, 이들 역시 직면한 재정 상황은 파산 신청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 쉽사리 짐작할 수 있다. 미 의회의 2005년 개정 연방파산법 설계가 소득을 기반으로 한 변제자력조사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보다 낮은 소득을 가지고 있더라도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순자산을 지닌 이들을 시스템에서 몰아내거나 제13장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고려는 하지 않고 있다.

11. 개정 이후 파산 신청자 급감에 대한 추정¹⁴⁷⁾

파산법 개정 이후 파산 신청자들의 수는 이전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다. 파산 신청자들의 소득 수준은 이전 년도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이전 년도에 비해 줄어든(신청하지 않은) 이들 역시 비슷한 프로파일을 지니고 있다고 논리적인 추론이 가능하다. 고소득 남용자들이 시스템 밖으로 밀려났을 수도 있으나 실증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 오히려 특정 소득 분위의 채무자 수 감소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파산 신청자 수가 감소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파산 신청자들이나 신청하지 않은 자들의 사회경제적 기반은 유사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파산을 신청하지 않은(파산제도에서 밀려난) 80만 가구들은 파산법 개정 이후 파산을 신청한 가구들과 대체로 유사한 소득 수준이라고 추론하는 데 무리가 없다.

147) Lawless et al., 앞의 논문, 375-377면의 내용을 요약 재구성하였다.

혹시 2005년 이전, 신청할 만한 저소득 채무자들이 모두 파산을 신청하였고, 이후에 신청한 이들의 소득 수준이 명백하게 ‘고소득’이었다면 개정 이후 파산 신청자 수가 급감한 사실에 대한 타당한 설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현실에서 발생했는지는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지금까지의 데이터들을 고려한다면 납득하기 어렵다.

만일 신청자와 비신청자 사이에 재정 상황이 유사하다면, 이들을 무작위로 파산 시스템에서 제외한 2005년 파산법 개정이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비신청자들이 신청자들에 비해 재정 상황이 더 좋다고 하더라도 그 수준은 2001년 파산 신청자들의 수준이고, 이는 2년 반의 소득을 상회하는 총 채무와 9개월의 소득에 해당하는 단기 채무에 해당한다. 해당 가구들은 이 정도의 재정 부담을 지니고 파산 시스템과 같은 이용가능한 보호책도 없이 채무와 싸우고 있다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개정 파산법은 변제자력이 없는 이들을 위한 파산 시스템에서 변제자력이 있는 이들을 걸러내기 위해 구성되었다. 80만의 비신청자들이 2007년 파산 신청자들에 비해 상황이 더 낮다고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2001년 파산 신청자들에 비해 더 큰 채무부담을 지고 있고, 이 사실은 BAPCPA가 변제자력이 있는 사람들을 걸러내기보다는 높은 채무 부담을 지닌 변제자력이 없는 이들을 비슷한 소득 수준이지만 보다 높은 채무 부담을 지닌 변제자력이 없는 이들로부터 걸러냈다는 것으로 작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5년 이후 파산 신청자의 급감은 파산을 신청했을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예상되는 소위 ‘사라진 80만’에 기인한 것이라 판단하였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위해 2001년과 2007년 파산 신청자들과의 전화 설문조사를 통해 얼마나 오랜 기간 채무와 싸워왔는지, 그리고 채무 수금원들의 경험에 대한 응답을 얻었다.¹⁴⁸⁾

148) 앞서 파산을 신청 가구들의 경제적 상황 비교·분석을 통해 고소득 채무자들이

먼저, 2001년과 2007년 두 시점을 대상으로 파산신청자들에 대한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응답자들이 채무와 얼마나 오랜 기간 싸워왔는지 명목척도¹⁴⁹⁾로 이루어진 5가지 보기(3개월 미만, 3~6개월, 6~12개월(1년), 1년~2년, 2년 이상) 내에서 응답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명목척도로 구성된 질적 변수로 구성된 2001년과 2007년의 응답들 사이의 연관성(association)을 살펴보기 위해 카이 제곱(2) 검정을 이용하여 연관성의 유의성(test for the significance)을 판정하고¹⁵⁰⁾, 연관성의 크기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Cramer's V를 이용하였다.¹⁵¹⁾ 2001년과 2007년의 5가지 보기 범주 중 선택한 응답들을 비교하여 시기별로 연관성이 있는지¹⁵²⁾,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고자 했다.¹⁵³⁾

걸러진 것이 아니라 무작위로 전 소득구간에서 파산 신청자들이 줄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실제 파산 신청자들과 신청하지 않는 자들 사이에 경제적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파산 신청자들의 경험을 통해 파산 신청을 하지 않은 자들의 상황도 충분히 유추할 수 있고, 이는 타당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149) 척도는 명목(Nominal), 서열(Ordinal), 등간(Interval), 비율(Ratio) 척도가 있다. 명목척도는 말 그대로 하나를 또 다른 것과 구분 짓기 위한 기호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그 예로는 성별, 인종 등을 들 수 있고, 연속변수를 목적에 따라 비연속변수로 변환한 범주변수 역시 포함된다. 위의 보기 범주는 정확히 3개월 단위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순서대로 서열을 이루고 있는 것도 아닌 단지 연구자들이 대략적으로 응답자들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임의로 구분지어 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분석 역시 명목척도에 적합한 분석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150) 두 데이터들 사이의 연관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지(명목척도로 측정된 변수들의 독립성을 검정하는 것으로서 두 변수가 독립적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하면, 두 데이터 셋 사이에 유의적인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음)검정하는 것 정도의 의미로서 유의수준(Sig. level(보통 .05) > p-value 일 경우 유의하다 판정, = or < 일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곧 연관이 없거나 바꿔 말해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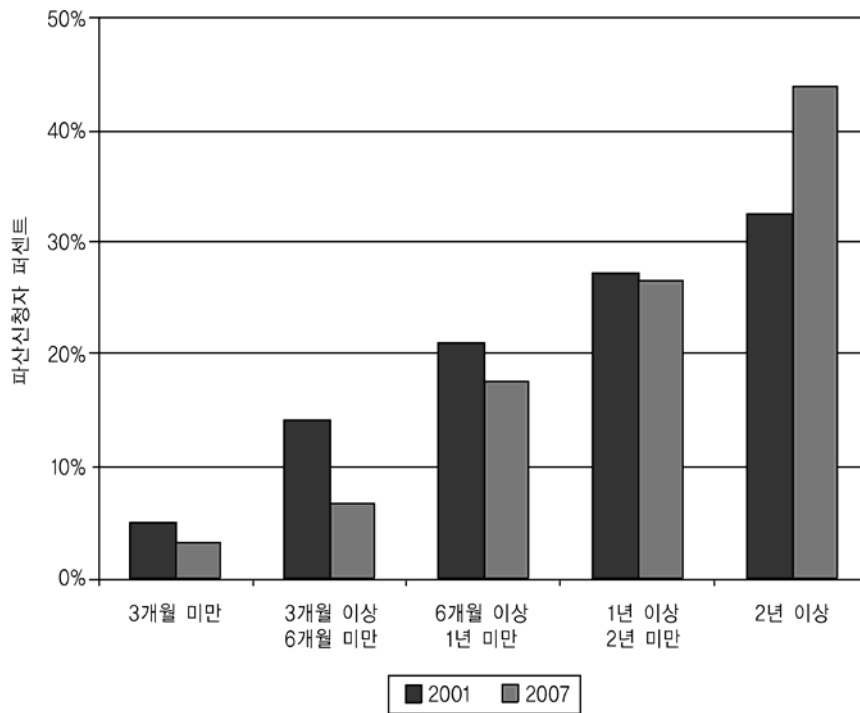
151) 연관성의 정도를 살펴볼 때, 질적 변수의 수준 내지 범주가 2개씩으로 이루어진 2 X 2 교차분석일 경우에는 phi()를 이용하고, 변수의 수준 내지 범주가 2개 이상 일 경우에 두 질적변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검정하기 위해 Cramer's V를 이용한다. 상태제, 현대 기초통계학의 이해와 적용, 교육과학사, 2001 참조

152) $H_0 : V = 0$, $H_A : V \neq 0$

153) Cramer's V가 .20 미만일 경우 경미한 상관, .20-.40일 경우 낮은 상관, .40-.70일 경우 상당한 상관, .70-.90일 경우 높은 상관, 그리고 .90이상일 경우 매우 높은 상관을 나타낸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채무와 싸워온 기간을 묻는 질문에 가장 긴 범주인 ‘2년 이상’ 항목을 선택한 비율은 2001년 32.6%에서 2007년 43.8%로 증가하였다. 장기간 채무와 싸워온 가구의 비율 차이가 2005년 이전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사실은¹⁵⁴⁾ 장기적으로 채무에 시달리는 이들의 비율이 현저하게 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데이터에 의하면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이들이 최대한 파산신청을 미루며 버티다 약 2년 후 결국 파산구제를 신청하는 구조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11 파산 전 (채무와) 고군분투한 기간의 비교



출처: Lawless et al., 앞의 논문, 373면.

154) Pearson $X^2 = 37.570$, $p < .001$; Cramer's $V = .153$, $p < .001$ 2001년과 2007년 데이터 셋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를 보이고, 두 기간 사이의 연관 정도는 .153으로 경미한 정도라 할 수 있다.

또 다른 질문은 채무 수금원들과의 경험에 관한 것이었는데, 이 응답을 통해 흥미로운 점을 추론할 수 있었다. 심각한 재정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파산 구제를 신청하지 않았으리라 예상되는 가구들의 그와 같은 행동 이유에 대해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다. 2007년 파산 신청자들의 추가 설문응답에서 이들 가운데 82%가 채무 수금원들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이 가운데 23.6%는 파산에 자격 미달이거나 신청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식의 문제 제기와 파산 신청 시 어떤 일이 생길 것인지 위협을 받았다는 응답을 얻었다. 파산을 신청하기로 결정한 이들 넷 중 하나가 문제 제기와 위협 메시지를 전달받았다면, 실제 더 많은 사람들이 망설이다 포기했을 것이라는 것은 쉽사리 짐작할 수 있었다.

12. 결과의 요약

2007년 소비자 파산 프로젝트의 결과를 간략히 요약하자면, 최초의 전국 규모의 표본을 이용한 2007 프로젝트는 변제가능한 채무자들을 가려내고 파산 신청을 줄이고자 하는 법목적에 가진 2005년 개정 연방 파산법의 효과를 실증적 분석을 통해 검증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수집된 표본을 기반으로 실제 파산 신청자들의 데이터를 법 개정 이전의 데이터들과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 개정 이후 파산 신청가구들의 소득이 개정 전 파산 신청 가구들의 소득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 사실은 지불 가능한 고소득의 채무자들이 파산 신청하는 것을 막고자 했던 입법취지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5년 개정 연방파산법이 소득에 초점을 맞추었을 뿐, 신용카드나 의료 채무와 같은 무담보채무에 관한 부담과 같은 전반적인 재정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2007년 파산 신청자들의 소득 대비 채무 비율은 2001년 파산 신청자들에 비해 더욱 높아졌다. 데이터들을 통해

불 때, 2007년 파산 신청자들은 2001년에 비해 더 많은 채무, 그 가운데서도 무담보채무의 부담이 크고, 가처분 소득으로 채무를 갚아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전반적인 데이터 분석 결과, 2005년 연방파산법 개정은 파산 신청으로 구제받고자 하는 자들을 그대로 구제하는 한편 변제가능자들을 걸러내는 스크린으로 작용하지 못하였으며, 수치적인 측면에서 파산 신청이 줄었을 뿐 실제 고통 받고 있는 파산 신청 대상자들은 아직도 크게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입법목적은 달성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제 4 장 결 론

1 가

현행 법안에 대한 입법평가를 실시하면서 그 방법론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미흡한 현실이다. 초기의 입법목적을 평가하는데 그 기준을 세우고 그 결과를 측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그와 같은 사후 입법평가에 대한 방법론의 현실 적용은 우리나라에서 소원한 일이다. 이 연구는 2005년 미국 파산법 개정에 대한 실증적 효과를 분석한 2007 소비자 파산 프로젝트를 통해 실제 어떠한 데이터들을 이용하여 어떠한 절차에 따라 연구가 진행되고 현행 법안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았다.

이 연구를 통해 향후 현행 법안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를 하는데 있어 데이터에 기반을 둔 실증적 연구방법론으로서 적용하기 위해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먼저 법안 발효 후 효과 발생 시점에 관한 문제이다. 실제 법안을 만들 때 초기의 입법목적은 달성했는지를 살펴보려면, 해당 법안의 특성에 따라 발효 즉시 효과가 나타나는 것과, 시간차를 두고 나타나는 것의 차이를 잘 이해하여야 한다. 이 연구는 미국 연방파산법 개정이 이루어진 후 약 2년 뒤 미국 전역의 파산 신청자들 수의 변화를 기반으로 이전의 데이터들과 함께 비교·분석하여 소기의 목적 달성 여부를 검증하였다. 파산 신청자들의 재정 상황이라는 것이 단시일내에 발생할 만한 성질의 것이 아니었기에¹⁵⁵⁾ 연방 파산법의 개정이 실제 적용되는 것을 살피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기간을 두는 것이 바

155) 천재지변이나 대공황, 그리고 국가채무불이행과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연구 기간 내에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다.

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발효 2년 후 실증적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이처럼 해당 법안의 특성을 감안한 데이터 수집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현행 법안에 대한 입법목적 달성 여부를 ‘평가’내지 ‘검증’하기 위해 적절한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초기 입법목적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데이터를 이용하여 그 효과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가능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세 번째로 입법 이전과 이후시점에 따른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입법목적 달성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적절한 초기 시점을 잡는 것과 동시에 그에 따르는 데이터 셋을 확보하고 구성하는 것이 요구된다. 시계열 데이터 혹은 패널 데이터를 이용한다면 보다 엄밀하고 타당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네 번째로 데이터를 이용한 실증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시점 간 데이터 확보에 관한 부분에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앞서 언급한 입법 초기에 목적 달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사전 설계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이전 데이터들 가운데 연구자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내용과 가장 유사한 항목들을 포함한 데이터 셋을 이용하는 방법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이 연구에서도 미국 전역으로부터 데이터를 얻어 2007년 소비자 파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연방파산법 이전과 비교하기 위한 데이터로서 2001년, 1991년, 1981년의 데이터 셋을 이용하였다. 앞서의 데이터들은 전국 표본은 아니었지만, 연구자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시기별 파산 신청자들의 소득, 자산, 채무 등에 대한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데이터들을 활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도 조사 시점이나 조사의 지정학적 범위가 다르다는 한계는 있지만, 연구자들이 각 시점의 데이터 셋이 가지고 있는 대표성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검증하여 2007년의 전국 표본과 비교·분석할 때 무리가 없다

고 판단하여 실제 적용하였다. 따라서 유사 데이터 셋을 이용할 경우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자들의 세심한 검증 노력이 필요하다. 연구자가 내부에서 각각의 데이터를 비교·분석하는 것이 가능한 정도인지 충분한 타당성을 검증한 이후 실제 분석에 이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계량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한다는 것이 절차를 제대로 지켜 재현성이 있는 결과를 도출한다면 그 결과의 보편타당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데이터 셋을 구성할 때, 그리고 데이터를 분석할 때 모두 엄밀한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계량 데이터의 수집으로 드러나기 힘든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터뷰라든지 추가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보완하는 노력은 기본이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셋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분석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도 소득 등의 편차가 큰 데이터를 이용하여 비교·분석할 때, 그 특성에 걸맞게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평균값(mean)이 아닌 중앙값(median)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시점 간 비교·분석 방법 역시 일반적인 t-검정이 아닌 윌콕슨 순위합 검정을 이용하는 세심함을 보였다. 또한 범주형 데이터를 이용하면서 시점 간 응답들의 연관성을 살펴보기 위해 카이 제곱 및 크래머 V를 이용하여 데이터의 특성에 가장 적절한 분석방법을 선택하였다.

이상에서 사후적 입법평가를 위한 데이터를 이용한 실증적 방법론으로서 활용하는데 주의해야 할 몇 가지를 살펴보았다. 사전 혹은 병행적 입법평가와 달리 사후적 입법평가는 이미 법안이 마련되어 그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에서 입법평가의 목적이 다른 것들과 달라질 수 밖에 없다. 입법 이전에 비해 현행 법안이 초기의 입법목적 달성을 제대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평가하는데 초점이 맞춰지게 된다. 실제 수범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살펴보는 방법도 있지만, 이 연구에서 보여주듯이 실제 데이터 셋들을 이용하여 비

교·분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데이터를 이용한 입법평가를 위해 가장 이상적인 경우는 법안을 마련하고자 할 때, 입법목적을 분명히 하고 이에 대한 달성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계량화 하여 제시할 수 있는 점들을 고려하여 평가 척도를 만들고 법안이 마련된 후, 그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연구에서 제시한 것처럼 유사 데이터 셋을 이용하는 방법을 현실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실증적 분석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에서 유사한 연구를 진행할 때, 기초로 삼을 수 있을뿐더러, 사후 입법평가연구 방법론 측면에서도 개정 전후의 데이터 비교분석을 통해 입법목적의 달성을 실증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2

1997년 이후 국내에서 본격화되기 시작한 개인파산제도는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을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어 성실하지만 불운한 사정에 의하여 채무변제가 불가능하게 된 채무자의 경제적 새출발에 대한 기회를 제공한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리고 2005년 3월 기존의 도산관계법을 통합하여 제정된 “채무자 희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요건에 따라 채무자가 자유롭게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도 파산절차를 악용하거나 남용하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염려가 증가하면서, 법원은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여,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심문을 거쳐 파산신청을 기각하고 있다. 채무자 희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2항에서는 “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는 경우¹⁵⁶⁾에도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심문을 거쳐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미국 연방 파산법의 실질적 남용(substantial abuse)을 이유로 한 파산신청 기각 제도를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되는데, 그 이후 법원은 파산절차의 남용 여부에 대한 심리를 강화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¹⁵⁷⁾

법원에서는 파산신청사건을 검토하여 그 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의심이 드는 사건은 심문기일을 지정하여(위 법 규정에 따라 파산절차의 남용을 인정하려면 필요적으로 심문기일을 거쳐야 한다) 채무자로 하여금 출석케 하고, 사실상 또는 법령상의 생계비를 초과하는 장래의 정기적인 수입이 있거나 사업이 계속되는 채무자의 경우 개인파산절차 대신 개인에 관한 회생절차의 이용을 간접적으로 유도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불응하면 위 규정에 따른 파산신청 기각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법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생활상황 등을 살펴보고 심문기일에서의 문답을 통하여 개인회생절차의 이용이 가능한지를 일단 검토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채무자의 소득 수준, 법정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 변제기간(원칙적으로 5년) 동안의 가용소득 분배액, 청산가치 보장 여부 등을 따져보아 채무자의 가용소득으로 채권자들에게 얼마나 변제가 가능한지를 확인하게 되는데, 이러한 검토를 통해 변제자력조사(Means Test)처럼 일률적이지는 않지

156) 즉, 보통파산원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제305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채무자의 지급불능의 경우를 말한다. 법인의 경우에는 “그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때”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 참조.

157)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는 2007년 하반기부터 채무자의 재산이나 소득 등에 대한 심사기준을 강화하는 등 엄격심사원칙을 도입해 운영해왔고, 2010년 4월경부터는 심문기일을 활성화하고 개인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재산상황 등을 조사하게 하는 등 ‘개인파산사건의 심리방식 전환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법률신문 2010. 4. 13.자 참조.

만 그에 유사하게 변제능력에 대한 조사도 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 더불어, 기타 파산신청의 동기 및 경위, 지급불능의 원인, 관련 이해관계인의 행태, 파산절차상 정보의 정확성, 그리고 채무자가 예정하고 있는 지출의 낭비적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¹⁵⁸⁾

우리 법원은 파산절차의 남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채무자의 변제능력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으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채무자가 현재는 지급불능 상태이지만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고, 이러한 소득에서 필수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생계비, 조세 등을 공제한 가용소득으로 채무의 상당 부분을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있기 때문에 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 등을 통하여 충분히 회생을 도모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파산절차를 남용한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채무자의 ‘변제능력’의 유무에 관해서는 구체적·객관적 평가 과정이 요청되나, 현재 구체적 기준에 대한 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 경우, 미국 연방 파산법상의 변제자력조사와 같은 구체적인 수치에 의한 기준의 도입여부가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158) 대법원 2011.1.25. 자 2010마1554,1555 결정.

제309조 제2항이 규정하는 바는 권리남용금지원칙의 한 표현으로서,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른 일반조항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권리의 행사에 관련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특히 위 법규정의 입법연혁이나 문언 및 규정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정직하고 성실한 채무자의 새로운 출발을 도모하면서도 채권자에게 보다 공평한 만족을 보장하려는 파산제도 기타 도산제도의 본래적 기능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현재 및 장래의 변제능력이 무겁게 고려됨은 물론이고(이에 관하여는 대법원 2009. 5. 28.자 2008마1904, 1905 결정 참조), 그 외에도 파산신청의 동기와 그에 이른 경위, 지급불능의 원인 및 그에 관련한 이해관계인들의 행태, 파산절차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각종 정보의 정확성, 채무자가 예정하는 지출 등의 낭비적 요소 유무 등이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미국의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파산절차의 남용을 판단하기 위하여 변제능력을 산정하는 때에 단순히 채무자의 ‘소득’만을 기준으로 하는 등 단일기준에 근거하는 것으로는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의 경제적 새출발에 대한 기회의 부여라는 개인파산법제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또한, 아직 초기단계에 있는 우리의 개인파산제도에서는 미국 연방파산법의 변제자력조사를 선불리 도입하기 보다는 위와 같이 ‘파산절차의 남용’을 적절히 규제하는 실무적 운용이 바람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국내에서는 법원이 파산 심리를 강화한 결과¹⁵⁹⁾ 개인파산사건은 2008년 이후 감소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산신청 기각률¹⁶⁰⁾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2005년 도입된 미국 연방파산법상 객관적 기준인 변제자력조사 시스템의 도입 여부는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객관적·수치적 기준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국내 실정에 적합한 변제자력 조사기준을 검토하여, 파산절차 남용의 판단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동 기준의 실질적 효과, 문제점 등 구체적 영향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파산절차 남용 규제 방지를 위한 실질적·구체적 대안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추구하는 범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159) 물론 위와 같은 법원 실무와 파산신청 기각률의 상관관계가 실증적으로 연구된 바는 없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파산사건의 심리를 엄격화한 것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뿐만 아니라 무자격자(브로커 등)에 의한 집단적 파산신청도 주요한 원인이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160) 2006년 0.2%(76,355건 중 164건), 2007년 1.4%(137,047건 중 1,980건), 2008년 3.2%(143,954건 중 4,690건), 2009년 3.2%(101,829건 중 3,267건), 2010년 5.3%(82,297건 중 4,400건). 사법연수원, 2011년 도산실무법관연수 자료 참조.

참고 문헌

[]

가. 단행본

- Baird, Douglas G. *The Elements of Bankruptcy*. 5th ed. New York, NY: Foundation Press, 2010.
- Frey, Martin A., Phyllis Hurley Frey, and Sidney K. Swinson. *Introduction to Bankruptcy Law*. 4th ed, West Legal Studies Series. Clifton Park, N.Y.: Thomson/Delmar Learning, 2005.
- Jackson, Thomas H. *The Logic and Limits of Bankruptcy Law*. Beard Books, 2001.
- LoPucki, Lynn M., and Christopher R. Mirick. *Strategies for Creditors in Bankruptcy Proceedings*. 5th ed. Austin: Aspen Publishers/Wolters Kluwer, 2007.
- Schlegel, John Henry. *American Legal Realism and Empirical Social Science, Studies in Legal History*.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95.
- Tabb, Charles Jordan. *The Law of Bankruptcy*, University Textbook Series. New York, NY: Foundation Press Thomson/West, 2009.
- Tabb, Charles Jordan, and Ralph Brubaker. *Bankruptcy Law: Principles, Policies, and Practice*. 3rd ed. New Providence, NJ: LexisNexis, 2010.
- Warren, Elizabeth, and Jay Lawrence Westbrook. *The Law of Debtors and Creditors: Text, Cases, and Problems*. 6th ed. Austin; New

York, NY: Wolters Kluwer Law & Business; Aspen Publishers, 2009.

나. 논문

Charles J. Tabb & Jillian McClelland, *Living with the Means Test*, 31 S.I.U.L.J. 463 (2007).

Donald R. Korobkin, *Rehabilitating Values: A Jurisprudence of Bankruptcy*, 91 Colum. L. Rev. 717 (1991).

Elizabeth Warren, *Bankruptcy Policy*, 54 U. Chi. L. Rev. 775 (1987).

Keneth N. Klee, *Legislative History of the New Bankruptcy Law*, 28 DePaul L. Rev. 941 (1979).

Eric A. Posner,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Bankruptcy Act of 1978*, 96 Mich. L. Rev. 47 (1997).

Lawless et al., *Interpreting Data: A Reply to Professor Pardo*, 83 AM. BANKR. L.J. 27 (2009).

Lynn M. Lopucki, *A General Theory of the Dynamics of the State Remedies/Bankruptcy System*, 1982 Wis. L. Rev. 311 (1982).

Rafael I. Pardo, *Failing to Answer Whether Bankruptcy Reform Failed: A Critique of the First Report from the 2007 Consumer Bankruptcy Project*, 83 AM. BANKR. L.J. 27 (2009).

Robert M. Lawless et al., *Did Bankruptcy Reform Fail - An Empirical Study of Consumer Debtors*, 82 Am. Bankr. L. J. 349, 351 (2008).

Sarah Rudolph Cole, *Obligations of the United States Trustee's Office under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J. Bankr. L. & Prac. 371 (1996).

- Teresa A. Sullivan, Elizabeth Warren & Jay Lawrence Westbrook, *Consumer Debtors Ten Years Later: A Financial Comparison of Consumer Bankrupts 1981-91*, 68 Am. Bankr. L.J. 121 (1994).
- Teresa A. Sullivan, Elizabeth Warren & Jay Lawrence Westbrook, *Folklore and Facts: A Preliminary Report from The Consumer Bankruptcy Project*, 60 Am. Bankr. L.J. 293 (1986).
- Teresa A. Sullivan, Elizabeth Warren & Jay Lawrence Westbrook, *Less Stigma or More Financial Distress: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Extraordinary Increase in Bankruptcy Filings*, 59 Stan L. Rev. 213 (2006).
- Vern Countryman, *A History of American Bankrupt Law*, 81 Com. L.J. 226 (1976); Stefan A. Riesenfeld, *The Evolution of Modern Bankruptcy Law*, 31 Minn. L. Rev. 401 (1931).

[]

가. 단행본

- 박영도, *입법학 입문*, 한국법제연구원, 2008.
- 박영도·장병일, *입법평가 입문 - 법률, 법규명령, 행정규칙 -*, 한국법제연구원, 2007.
- 오수근, *도산법의 이해*,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8.
- 윤영신, *미국의 도산법*, 한국법제연구원, 1998.
- 이상범, *채무자 희생·파산 분석요해*, 법문북스, 2009.
- 임치용, *파산법연구 2*, 박영사, 2006.

임치용, 파산법연구 3, 박영사, 2010.

임치용, 파산법연구, 박영사, 2004.

채서일, 사회과학조사방법론, 2005.

한병호 외, 통합도산법에 따른 개인회생, 파산실무, 진원사, 2010.

나. 논문

김상찬, 소비자파산에 있어서 파산자의 면책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20집, 한국법학회, 2005. 11.

김종석, 미국 파산법 제364조에 의한 채무자 구제금융에 관한 소고, 인권과 정의, 대한변호사협회, 2002. 9.

연기영·이재목, 소비자파산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면책요건을 중심으로 -, 민사법학 제18호, 한국민사법학회, 2000. 5.

이재목, 미국 연방파산법상의 소비자파산제도와 개혁논의의 경과, 인권과 정의, 대한변호사협회, 2000. 1.

임채웅,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의 비면책채권의 범위 및 면책후 추심행위의 금지에 관한 연구, 저스티스 통권 89호, 한국법학원, 2006.

전병서, 파산면책의 입법적 검토, 저스티스제31권 제1호, 한국법학원, 1998.

전병서, 파산절차의 남용규제·대법원 2009.5.28.자 2008마1904, 1905 결정과 미국 연방파산법의 변제자력조사를 소재로, 법학논고 제31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10.



부 록

2007 소비자 파산 프로젝트 설문

전화 인터뷰 (\$50)

우리는 우리 연구에서 참여자들과 기밀 후속 인터뷰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 설문지에 답을 적으신 후에 전화 인터뷰 참여에 관심이 있으시면 7페이지에 있는 서식을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비영리 자선단체의 후원으로 우리는 참여자들에게 전화인터뷰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50달러를 드립니다.

전화 인터뷰 중 제공하신 모든 정보는 비밀로 지켜집니다. 당신의 이름은 어떤 응답과도 연관되지 않을 것이며, 이 연구 프로젝트 이외의 어느 누구도 당신의 응답에 접촉할 수 없을 것입니다.

-- 가 족 --

1. 당신의 결혼 상태는 어떻습니까?

결혼한 적 없음

결혼한 상태

별거

이혼

사별

기타

2. 당신은 한 명의 배우자 혹은 영구적 파트너와 함께 사십니까?

예

아니오

3. 당신, 혹은 배우자나 파트너가 누군가(예를 들어 자녀들, 의붓 자녀들, 부모님 혹은 전처나 전남편)에 대해 재정적 의무를 지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 질문 4로 가십시오.

a. 그들의 연령, 당신과의 관계(예를 들어, 딸, 의붓아들, 어머니, 전 배우자) 그리고 동거 여부를 나타내주십시오.

사람 1: 나이 ____ 당신과의 관계 ____ 당신과 함께 삽니까? 예

아니오

사람 2: 나이 ____ 당신과의 관계 ____ 당신과 함께 삽니까? 예

아니오

사람 3: 나이 ____ 당신과의 관계 ____ 당신과 함께 삽니까? 예

아니오

사람 4: 나이 ____ 당신과의 관계 ____ 당신과 함께 삽니까? 예

아니오

사람 5: 나이 ____ 당신과의 관계 ____ 당신과 함께 삽니까? 예

아니오

b. 만일 당신이 5명 이상의 사람에게 대해 재정적 의무를 지고 있다면, 아래에 있는 줄에 그들의 나이, 당신과의 관계, 그리고 동거 여부를 나타내 주십시오.

4. 파산 이전에 당신의 부채나 재정적 문제들이 당신의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까?

적용불가; 무자녀

예

아니오

5. 파산 이전에 당신의 부채나 재정적 문제들이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 혹은 파트너 간에 긴장을 증가시켰습니까?

적용불가; 배우자나 파트너 없음.

예

아니오

→ 만일 당신이 현재 배우자 혹은 영구적 파트너와 함께 산다면, 양쪽 란 모두에 답을 적어 주십시오.

	<u>당신</u>	<u>당신의 배우자 혹은 파트너</u>
6. 당신의 성별은?	남성 남성	여성 여성
7. 당신의 나이는?	_____	_____
8. 당신은 어느 그룹에 속합니까? 적용되는 항목 모두 체크	아프리칸-아메리칸 혹은 흑인아시아계미국인 스페인 혹은 라틴계 백인 혹은 코카시안 기타_____	아프리칸-아메리칸 혹은 흑인아시아계미국인 스페인 혹은 라틴계 백인 혹은 코카시안 기타_____
	(구체적으로 명시) 없다.	(구체적으로 명시) 없다.

-- 교 육 --

9. 최종 학력은? 컬리지 1년 이상, 학위 없음 컬리지 1년 이상, 학위 없음
 관련 학위(예, AA 혹은 AS) 관련 학위(예, AA 혹은 AS)
 학사 학위(예, BA, BS, AB) 학사 학위(예, BA, BS, AB)
 석사 학위(예, MA, MS, MSW, MBA) 석사 학위(예, MA, MS, MSW, MBA)
 박사 학위 혹은 전문 학위(예, PhD, MD, JD) 박사 학위 혹은 전문 학위(예, PhD, MD, JD)
 기타 _____(명기) 기타 _____(명기)

10. 만일 당신이나 배우자 혹은 파트너가 파산시에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의무를 지고 있다면 그것은 누구의 대출입니까? 적용되는 항목 모두 체크
적용불가; 학자금 대출에 대한 재정적 의무가 없음 → 질문 11로 가시오.
당신
당신의 배우자나 파트너
그 외 사람(예, 자녀들 혹은 의붓 자녀들)

- a. 파산 시에 당신이나 당신의 배우자 혹은 파트너 책임의 학자금 대출 총액은 얼마입니까?
\$10,000미만
\$10,000~\$20,000
\$20,000이상
- b. 이 학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가 파산 신청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까?
예
아니오
11. 다음 중 당신의 현재 상황을 잘 설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당신의 집을 소유하고 있거나 주택에 대한 대출을 갚고 있음.
임대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고 누군가와 함께 살고 있음.
기타(구체적으로 명기하세요.) _____
12. 당신은 지난 5년 동안 어느 때든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습니까?
네
아니오 → 질문 14로 가십시오.
13. 그 시기 동안 당신은 다음 중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적용되는 항목 모두 체크
저당물 반환권 상실로 주택을 잃거나 재정적 곤란으로 은행에 양도
재정적 곤란으로 주택 매매
모두 해당사항이 아님

--- 건 강 ---

	<u>당신</u>	<u>당신의 배우자 혹은 파트너</u>
14. 당신은 현재 건강 보험을 가지고 있습니까? 고용주에 의한 개인 보험이나 당신이 가입한 개인 보험, 군인 의료보험이나 퇴역(재향)군인 의료보험, 고령, 장애인 의료보험 혹은 극빈자 의료보험 포함	예 아니오	예 아니오
15. 당신은 파산 전 2년 동안 지속적으로 건강보험에 들어있었습니까?	예 아니오	예 아니오
16. 질문 3의 목록에 있는 당신이 부양하는 사람들 모두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습니까? 적용불가; 부양할 사람 없음	예 아니오	
17. 질문 3의 목록에 있는 당신이 부양하는 사람들 모두 파산 전 2년 동안 지속적으로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적용불가; 부양할 사람 없음	예 아니오	

18. 파산 전 2년 동안 당신 혹은 당신의 배우자나 파트너가 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약 처방이나 의료 사용자 부담을 포함하여 의료비에 재정적 책임을 진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 질문 19로 가십시오.

a. 당신이나 배우자 혹은 파트너가 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의료비나 처방에 대해 어떻게 지불하셨습니다?

현금, 수표 혹은 현금카드로 지불

정규 신용카드로 지불

의료신용카드(Citi Health Card, Care Credit, 혹은 Medi Credit)로 지불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로 지불

의료 제공자와 지불 계획에 동의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_____

b. 파산 전 2년 동안 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처방과 지불금을 포함하여 의료비는 대략 얼마였습니까? 확실하지 않더라도 가장 근접한 추정액을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1000미만

\$1,000~\$5,000

\$5,001~\$10,000

\$10,000이상

--- 고 용 ---

	<u>당신</u>	<u>당신의 배우자 혹은 파트너</u>
19. 다음의 어떤 이유로든, 파산 전 2년 동안 당신은 2주 혹은 그 이상 일과 관련된 수입을 잃은 적이 있습니까? <u>적용되는 모든 항목 체크</u>	아니오 2005년 1월 이후 무직 예, 휴직 혹은 해고 예, 질병 혹은 부상 예, 병든 가족을 돌보기 위해 시간을 줄임 예, 다른 이유로 없음	아니오 2005년 1월 이후 무직 예, 휴직 혹은 해고 예, 질병 혹은 부상 예, 병든 가족을 돌보기 위해 시간을 줄임 예, 다른 이유로 없음
20. 당신의 현재 직업상태는?	피고용자 혹은 자영업 무직, 구직중 무직, 구직 활동 안함 무직, 의료상의 이유로 일할 수 없음 은퇴	피고용자 혹은 자영업 무직, 구직중 무직, 구직 활동 안함 무직, 의료상의 이유로 일할 수 없음 은퇴
21. 어떤 종류의 일을 하고 있거나 했습니까?	_____ (기재하세요.)	_____ (기재하세요.)

	<u>당신</u>	<u>당신의 배우자 혹은 파트너</u>
22. 파산 전 2년 동안 어느 때든 자영업을 한 적 있습니까?	예 아니오 → 질문23 으로	예 아니오 → 질문23 으로
a. 파산 신청을 낼 당시 당신은 자영업자였습니까?	예 아니오	예 아니오
b. 그 사업에서 당신이 배우자 혹은 동반자 이외 고용인을 두었습니까? <u>적용되는 모든 항목 체크</u>	예, 파산 전 2년 동안 얼마간 예, 파산 신청을 낸 당시에 아니오, 고용인을 둔 적 없음	예, 파산 전 2년 동안 얼마간 예, 파산 신청을 낸 당시에 아니오, 고용인을 둔 적 없음
c. 그 사업은 법인이거나 유한책임회사(LLC)였습니까?	예 아니오	예 아니오
23. 당신은 현재 예비군이거나 주 방위군을 포함해 미군이거나 복무했던 적 있습니까?	예, 현재 미군에 종사 예, 이전에 미군에 종사 아니오, 종사한 적 없음	예, 현재 미군에 종사 예, 이전에 미군에 종사 아니오, 종사한 적 없음

--- 파산 신청 전 대응 노력 ---

24. 파산 전 2년 동안 당신 혹은 당신의 배우자나 파트너는 적자를 내지 않기 위해 다음 중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해당되는 항목 모두 체크
- 더 많은 시간을 일하거나 또 다른 일을 구함
 - 은퇴 자금, 연금보장대책(401k), 은퇴후 연금(pension account), 생명보험에서 돈을 빼거나 빌림
 - 집을 팔
 - 임대주나 신용카드 회사와 같은 채권자들에게 지불금에 대해 당신과 일해주길 요청함
 - 차, 가구, 혹은 다른 개인적 자산을 팔거나 저당잡힘
 - 신용카드나 새 대출로 빚을 통합
 - 돈을 빌리거나 급전을 구하기 위해 단기 소액 대출(예, Check to Cash)이나 car title lender를 이용함
 - 필수품을 신용카드로 지불(예, 음식이나 고지서)
 - 가족이나 친구로부터 돈을 받거나 빌림
 - 종교 집단이나 자선 단체로부터 돈을 받거나 빌림
 - 기타(구체적으로 기재) _____

---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

25. 사람들은 수많은 다른 이유들로 파산신청을 합니다. 당신이나 배우자 혹은 파트너는 무슨 이유로 파산을 신청했습니까? 적용되는 모든 항목 체크
- 수입 감소
 - 자영업으로 인한 재정적 문제

질병이나 부상으로 당신 혹은 당신의 파트너가 2주일 혹은 그 이상 일을 못하게 됨
당신 혹은 파트너나 동반자가 의료 상의 문제들을 겪게 됨
다른 가족들(자녀들 혹은 부모님)의 의료 문제들로 인해 처방약을 포함한 의료 혹은 건강 치료비로 인해
당신의 가구 내에 사는 구성원의 증가(예, 출산, 입양 혹은 생계의 변화)
가족 구성원의 죽음
이혼이나 별거로 인한 가족 해체
담보대출 납부가 감당할 수 없이 증가
담보대출 납부를 늦추려 담보대출 차환을 원했으나 할 수 없었음

\$50를 버십시오.

우리가 파산에 대해 더 많이 알도록 도와주시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연구에서 참여자들과 기밀 후속 인터뷰를 수행하길 바랍니다. 인터뷰하시는 동안 당신은 당신이 방금 응답하신 것과 유사한 질문들을 받을 것입니다.

참여에 관심이 있으시면 아래의 사항을 기입해주십시오.

이름 _____ 서명 _____

전화번호 _____ 이메일주소 _____

만일 전화번호가 바뀌면 무료전화 866-391-8201로 부담없이 전화하십시오. 혹은 thored@ohio.edu로 Thorne교수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다시 한번, 당신의 모든 응답들은 완전히 비밀로 보장됨을 약속합니다. 당신의 이름은 어떤 응답들과도 절대로 연관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구 프로젝트 이외의 어느 누구도 당신이 제공한 정보에 접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 록

만일 당신이 우리와 공유하는 것이 편하다면 우리는 당신의 과산 이야기와 무슨 일이 당신에게 일어났는지를 듣고 싶습니다. 아래의 여백에 당신이 쓰고 싶은 만큼 자유롭게 써주십시오.
